

2021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I. 예산개요

1. 세입예산

■ 2021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19조 7,827억 9천 6백만원) 대비 2.5%(4,964억 8천만원) 증액한 20조 2,792억 6천 6백만원임.

※ 2020년도 최종예산 22조 872억 1천 9백만원 대비 8.2%(1조 8,079억 5천 3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대비 증감		증 감 륜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계	19,782,786	22,087,219	20,279,266	496,480	△1,807,953	2.5%	△8.2%
지방세 수입	19,552,425	19,552,425	20,023,706	471,281	471,281	2.4%	2.4%
지방세	19,552,425	19,552,425	20,023,706	471,281	471,281	2.4%	2.4%
보통세	17,495,135	17,495,135	17,884,431	389,296	389,296	2.2%	2.2%
목적세	1,835,212	1,835,212	1,938,270	103,058	103,058	5.6%	5.6%
지난연도수입	222,078	222,078	201,005	△21,073	△21,073	△9.5%	△9.5%
세외수입	228,656	228,656	253,930	25,273	25,273	11.1	11.1
경상적세외수입	56,916	56,916	33,196	△23,720	△23,720	△41.7	△41.7
재산임대수입	14,027	14,027	12,974	△1,053	△1,053	△7.5	△7.5
사용료수입	2,301	2,301	1,185	△1,115	△1,115	△48.5	△48.5
수수료수입	723	723	786	62	62	8.7	8.7
이자수입	39,864	39,864	18,250	△21,614	△21,614	△54.2	△54.2
임시적세외수입	171,235	171,235	220,251	49,015	49,015	28.6%	28.6%
재산매각수입	57,956	57,956	106,511	48,554	48,554	83.8	83.8
기타수입	106,211	106,211	106,350	138	138	0.1	0.1
지난연도수입	7,066	7,066	7,389	322	322	4.6	4.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4	504	482	△22	△22	△4.4	△4.4
보조금	1,704	1,704	1,630	△74	△74	△4.4	△4.4
국고보조금등	1,704	1,704	1,630	△74	△74	△4.4	△4.4
국고보조금	1,704	1,704	1,630	△74	△74	△4.4	△4.4
보전수입	-	2,304,433	-	-	△2,304,433	-	100
보전수입등	-	2,304,433	-	-	△2,304,433	-	100
순세계잉여금	-	2,304,433	-	-	△2,304,433	-	100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당 초	2020년도 최종	2021년도	2020년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19,782,786	22,087,219	20,279,266	496,480	△1,807,953	2.5%	△8.2%
지방세수입	19,552,425	19,552,425	20,023,706	471,281	471,281	2.4%	2.4%
보통세	17,495,135	17,495,135	17,884,431	389,296	389,296	2.2%	2.2%
취득세	4,632,967	4,632,967	5,058,937	425,970	425,970	9.2%	9.2%
주민세	594,465	594,465	601,134	6,669	6,669	1.1%	1.1%
재산세	2,998,999	2,998,999	3,394,557	395,558	395,558	13.2%	13.2%
자동차세	1,104,975	1,104,975	1,186,241	81,266	81,266	7.3%	7.3%
레저세	124,873	124,873	42,702	△82,171	△82,171	△65.8%	△65.8%
담배소비세	564,349	564,349	580,150	15,801	15,801	2.8%	2.8%
지방소비세	2,041,427	2,041,427	1,824,280	△217,147	△217,147	△10.6%	△10.6%
지방소득세	5,433,080	5,433,080	5,196,430	△236,650	△236,650	△4.3%	△4.3%
목적세	1,835,212	1,835,212	1,938,270	103,058	103,058	5.6%	5.6%
지역지원시설세	300,925	300,925	304,768	3,843	3,843	1.2%	1.2%
지방교육세	1,534,287	1,534,287	1,633,502	99,215	99,215	6.4%	6.4%
지난년도수입	222,078	222,078	201,005	△21,073	△21,073	△9.4%	△9.4%
지난년도수입	222,078	222,078	201,005	△21,073	△21,073	△9.4%	△9.4%
세외수입 계	228,656	228,656	253,930	25,273	25,273	11.0%	11.0%
정상적 세외수입	56,916	56,916	33,196	△23,720	△23,720	△41.6%	△41.6%
재산임대수입	14,027	14,027	12,974	△1,053	△1,053	△7.5%	△7.5%
공유재산임대료	14,027	14,027	12,974	△1,053	△1,053	△7.5%	△7.5%
사용료수입	2,301	2,301	1,185	△1,115	△1,115	△48.4%	△48.4%
기타사용료	2,301	2,301	1,185	△1,115	△1,115	△48.4%	△48.4%
수수료수입	723	723	786	62	62	8.6%	8.6%
증지수입	723	723	786	62	62	8.6%	8.6%
이자수입	39,864	39,864	18,250	△21,614	△21,614	△54.2%	△54.2%
공공예금이자수입	35,404	35,404	13,923	△21,480	△21,480	△60.7%	△60.7%
기타이자수입	4,460	4,460	4,326	△133	△133	△3.0%	△3.0%
임시적세외수입	171,235	171,235	220,251	49,015	49,015	28.6%	28.6%
재산매각수입	57,956	57,956	106,511	48,554	48,554	83.8%	83.8%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7,956	57,956	106,511	48,554	48,554	83.8%	83.8%
기타수입	106,211	106,211	106,350	138	138	0.1%	0.1%
채납처분수입	2	2	5	3	3	150.0%	150.0%
위약금	175	175	194	19	19	10.9%	10.9%
그외수입	106,034	106,034	106,149	115	115	0.1%	0.1%

구 분	2020년도 당 초	2020년도 최 종	2021년도	2020년대비 증감		증감률(%)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지년연도수입	7,066	7,066	7,389	322	322	4.6%	4.6%
지년연도수입	7,066	7,066	7,389	322	322	4.6%	4.6%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04	504	482	△22	△22	△4.4%	△4.4%
변상금	504	504	482	△22	△22	△4.4%	△4.4%
보조금	1,704	1,704	1,630	△74	△74	△4.3%	△4.3%
국고보조금등	1,704	1,704	1,630	△74	△74	△4.3%	△4.3%
국고보조금	1,704	1,704	1,630	△74	△74	△4.3%	△4.3%
보전수입	-	2,304,433	-	-	△2,304,433	-	100
보전수입등	-	2,304,433	-	-	△2,304,433	-	100
순세계잉여금	-	2,304,433	-	-	△2,304,433	-	100

2.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21년 세출예산은 2조 9,320억 8천 5백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조 7,064억 8천 3백만원 대비 8.3%
 증액된 수준이며,
 2020년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한 최종예산 2조 8,856억
 8천9백만원 대비 1.6%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 예산(안)	2020년대비 증감		증감률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총 계	2,706,483	2,885,689	2,932,085	225,602	46,396	8.3%	1.6%	
행정안전부	소 계	2,706,483	2,885,689	2,932,085	225,602	46,396	8.3%	1.6%
	행정운영경비	785,482	785,482	803,451	17,968	17,968	2.3%	2.3%
	재무활동	8	8	2	△6	△6	△69.0%	△69.0%
	사업비	1,920,992	2,100,198	2,128,632	207,639	28,433	10.8%	1.4%
	재정보전금	1,459,998	1,607,945	1,675,686	215,688	67,741	14.8%	4.0%
	징수교부금	404,288	468,125	407,378	3,089	△60,747	0.8%	△13.0%

- 2021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0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0 예산		2021 예산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합 계	2,706,483,348	2,885,689,037	2,932,085,510	225,602,162	46,396,473	8.3%	1.6%
재무과	787,276,739	786,946,739	804,779,271	17,502,532	17,832,532	2.2%	2.3%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2,248,620	1,918,620	1,793,738	△454,882	△124,882	△20.2%	△6.5%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2,035,842	1,705,842	1,553,701	△482,141	△152,141	△23.7%	△8.9%
-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1,047,330	717,330	830,710	△216,620	113,380	△20.7%	15.8%
- 2020 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	218,435	218,435	212,580	△5,855	△5,855	△2.7%	△2.7%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43,518	43,518	175,703	132,185	132,185	303.7%	303.7%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0 예산		2021 예산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 초	최 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726,559	726,559	334,708	△391,851	△391,851	△53.9%	△53.9%
체계적인 계약제도 운영	212,778	212,778	240,037	27,259	27,259	12.8%	12.8%
계약심의회위원회 등 운영	20,736	20,736	25,957	5,221	5,221	25.2%	25.2%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101,000	101,000	101,000	0	0	0.0%	0.0%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91,042	91,042	113,080	22,038	22,038	24.2%	24.2%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785,028,119	785,028,119	802,985,533	17,957,414	17,957,414	2.3%	2.3%
기본경비	1,756,808	1,756,808	1,759,756	2,948	2,948	0.2%	0.2%
인력운영비	783,271,311	783,271,311	801,225,777	17,954,466	17,954,466	2.3%	2.3%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83,271,311	783,271,311	801,225,777	17,954,466	17,954,466	2.3%	2.3%
자산관리과	35,233,048	2,354,379	8,981,884	△26,251,164	6,627,505	△74.5%	281.5%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35,187,313	2,308,644	8,934,518	△26,252,795	6,625,874	△74.6%	287.0%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35,187,313	2,308,644	8,934,518	△26,252,795	6,625,874	△74.6%	287.0%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 교환	33,218,000	400,000	7,000,000	△26,218,000	6,600,000	△78.9%	1650.0%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878,631	1,817,962	1,816,164	△62,467	△1,798	△3.3%	△0.1%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0,682	90,682	118,354	27,672	27,672	30.5%	30.5%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자산관리과)	45,735	45,735	47,366	1,631	1,631	3.6%	3.6%
기본경비	45,735	45,735	47,366	1,631	1,631	3.6%	3.6%
기본경비	45,735	45,735	47,366	1,631	1,631	3.6%	3.6%
계약심사과	158,365	122,495	112,168	△46,197	△10,327	△29.2%	△8.4%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89,870	54,000	42,500	△47,370	△11,500	△52.7%	△21.3%
계약심사업무 전문성 강화	89,870	54,000	42,500	△47,370	△11,500	△52.7%	△21.3%
계약심사 업무추진	54,000	54,000	42,500	△11,500	△11,500	△21.3%	△21.3%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5,870	-	-	△35,870	0	△100.0%	△100.0%
행정운영경비(재무국 계약심사과)	68,495	68,495	69,668	1,173	1,173	1.7%	1.7%
기본경비	68,495	68,495	69,668	1,173	1,173	1.7%	1.7%
기본경비	68,495	68,495	69,668	1,173	1,173	1.7%	1.7%
세제과	1,462,000,356	1,610,718,504	1,682,710,280	220,709,924	71,991,776	15.1%	4.5%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871,904	2,642,904	2,239,524	367,620	△403,380	19.6%	△15.3%
납세자 권리보호	152,300	152,300	194,920	42,620	42,620	28.0%	28.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42,300	142,300	186,920	44,620	44,620	31.4%	31.4%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0 예산		2021 예산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 초	최 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마을사무사 운영	10,000	10,000	8,000	△2,000	△2,000	△20.0%	△20.0%
지방세제 개선	10,000	0	1,200	△8,800	1,200	△88.0%	△88.0%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000	0	1,200	△8,800	1,200	△88.0%	△88.0%
세수증대 활동지원	1,709,604	2,490,604	2,043,404	333,800	△447,200	19.5%	△18.0%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1,709,604	1,709,604	1,637,753	△71,851	△71,851	△4.2%	△4.2%
부동산가격 공시지원	-	781,000	405,651	405,651	△375,349	100.0%	△48.1%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제과)	122,182	122,182	125,260	3,078	3,078	2.5%	2.5%
기본경비	122,182	122,182	125,260	3,078	3,078	2.5%	2.5%
기본경비	122,182	122,182	125,260	3,078	3,078	2.5%	2.5%
재무활동(재무국 세제과)	8,270	8,270	2,565	△5,705	△5,705	△69.0%	△69.0%
보전지출(재무국 세제과)	8,270	8,270	2,565	△5,705	△5,705	△69.0%	△69.0%
국고보조금 반환	8,270	8,270	2,565	△5,705	△5,705	△69.0%	△69.0%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1,459,998,000	1,607,945,148	1,675,686,000	215,688,000	67,740,852	14.8%	4.2%
자치구교부금(재무국 세제과)	1,459,998,000	1,607,945,148	1,675,686,000	215,688,000	67,740,852	14.8%	4.2%
재정보전금	1,459,998,000	1,607,945,148	1,675,686,000	215,688,000	67,740,852	14.8%	4.2%
출연(재무국 세제과)	-	-	4,656,931	4,656,931	4,656,931	100.0%	100.0%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	4,656,931	4,656,931	4,656,931	100.0%	100.0%
세무과	414,257,687	478,074,897	428,429,939	14,172,252	△49,644,958	3.4%	△10.4%
시세입 목표달성	9,827,506	9,827,506	20,906,419	11,078,913	11,078,913	112.7%	112.7%
효율적인 세입관리	1,213,300	1,213,300	1,218,917	5,617	5,617	0.5%	0.5%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218,772	218,772	172,474	△46,298	△46,298	△21.2%	△21.2%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31,560	831,560	850,532	18,972	18,972	2.3%	2.3%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62,968	162,968	195,911	32,943	32,943	20.2%	20.2%
세수증대 동기부여	6,014,022	5,994,022	6,593,230	579,208	599,208	9.6%	10.0%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94,200	194,200	192,700	△1,500	△1,500	△0.8%	△0.8%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689,822	689,822	1,300,530	610,708	610,708	88.5%	88.5%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000	-	-	△30,000	0	△100.0%	△10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100,000	100,000	100,000	-	0	-	0.0%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5,000,000	5,000,000	5,000,000	0	0	0.0%	0.0%
세입관련 전산시스템 효율적관리	1,655,078	1,655,078	12,214,540	10,559,462	10,559,462	638%	638.0%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0 예산		2021 예산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 초	최 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655,078	1,655,078	1,730,770	75,692	75,692	4.6%	4.6%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운영분담금	-	-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	100.0%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 관리 컨설팅	-	-	483,770	483,770	483,770	100.0%	100.0%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945,106	945,106	879,732	△65,374	△65,374	△6.9%	△6.9%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45,106	945,106	879,732	△65,374	△65,374	△6.9%	△6.9%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141,631	141,631	145,510	3,879	3,879	2.7%	2.7%
기본경비	141,631	141,631	145,510	3,879	3,879	2.7%	2.7%
기본경비	141,631	141,631	145,510	3,879	3,879	2.7%	2.7%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404,288,550	468,125,760	407,378,010	3,089,460	△60,747,750	0.8%	△13.0%
자치교구부금(재무국 세무과)	404,288,550	468,125,760	407,378,010	3,089,460	△60,747,750	0.8%	△13.0%
시세 징수교부금	404,288,550	468,125,760	407,378,010	3,089,460	△60,747,750	0.8%	-13.0%
38세금징수과	7,593,023	7,472,023	7,071,968	△521,055	△400,055	△6.9%	△5.4%
조세징의 실현	7,517,052	7,396,052	6,994,402	△522,650	△401,650	△7.0%	△5.4%
체납시세 징수 전폭 지원	7,238,442	7,117,442	6,726,262	△512,180	△391,180	△7.1%	△5.5%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22,482	2,112,482	1,940,024	△282,458	△172,458	△12.7%	△8.2%
자동차세체납차량 변 호환 영치업무지원	5,004,960	5,004,960	4,786,238	△218,722	△218,722	△4.4%	△4.4%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 구 합동워크샵	11,000	-	-	△11,000	0	△100.0%	△100.0%
강력한 고액체납시세징 수	278,610	278,610	268,140	△10,470	△10,470	△3.8%	△3.8%
고액 체납시세 징수 강화	278,610	278,610	268,140	△10,470	△10,470	△3.8%	△3.8%
행정운영경비(재무국 38세금징수과)	75,971	75,971	77,566	1,595	1,595	2.1%	2.1%
기본경비	75,971	75,971	77,566	1,595	1,595	2.1%	2.1%
기본경비	75,971	75,971	77,566	1,595	1,595	2.1%	2.1%

II. 검토 의견

1. 2021년도 세입 여건 전망

○ 서울특별시 2021년도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39조 5,282억원) 대비 1.3%(5,197억원) 증액한 40조 479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20년도 최종예산(45조 48억원) 대비 11.0%(4조 9,569억원) 감액한 수준임.

< 2021년 서울시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21 예산(안)	2020 예산	증 감	비율(%)
계	40,047,933,047	45,004,840,219	△4,956,907,172	△11.0
일 반 회 계	27,665,803,061	32,528,018,902	△4,862,215,841	△14.9
특 별 회 계	12,382,129,986	12,476,821,317	△94,691,331	△0.8

※ '20년 최종예산(45조 48억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 민생안정을 위한 네 차례의 추경 단행으로 당초예산(39조 5,282억원) 대비 13.8%(5조 4,766억원) 증액된 것임.

○ 서울시는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40조원을 초과하는 역대 최대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음.

※ 재무국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2.4%(4,713억원) 증액 편성

○ 반면, 재무국은 안정적 시 재정운동을 위한 지방세 등의 세입여건은 다소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계적 감염병 확산 충격으로 금년 국내 경제는 역성장(△1.1~△1.9%)이 전망되는 등, 2021년에도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세입 여건의 불안정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주요 전망기관은 2021년도에 2.3~3.1%의 경제성장을 전망함.

〈2020~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구 분	KDI	한국은행	국 회	IMF	OECD
2020년	△1.1	△1.3	△1.6	△1.9	△0.8
2021년	3.1	2.8	2.3	2.9	3.1

〈2020~2021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구 분	IMF		OECD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성 장 율	△4.4	5.2	△4.5	5.0

- 또한, 지방세 수입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시장은 2017년부터 금년까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이 지속 중이나,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 서울 주택 매매가격 증감 현황〉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7월
증 감 률	3.64%	6.22%	1.25%	1.36%

※ 출처: 한국감정원 종합주택유형 매매가격지수 변동율

- 2020년에도 정부는 7.10.대책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하여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 투기 과세 강화,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및 주택 임대차 3법 개정 등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매물이 급감하는 등 시장 상황은 불안정성이 지속되어 2021년 세입 여건은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재무국 취득세(부동산)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9.2% 증액편성 하였음.

〈'20년 정부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발표일	주요 내용
'20.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시가 9억원 기준 구간별 LTV 차등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60%→시가 9억원 초과 부분은 30%, 시가 9억원 이하 부분은 50% 차등 적용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20.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20.10.27.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지역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 -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의무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
'20.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단기거래 세부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2주택자'는 8%로, '3주택 이상자 또는 법인'은 12%로 종과세 - (양도세) 단기양도차익 과세 강화(1년미만 40→60%, 2년미만 기본세율→60%)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 종과세 강화(기본세율(종과세율 10~20%→20%~30%)) - (종부세)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1.2~6.0% 구간 신설, 법인 최고세율 6% 적용 ○ 임대사업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4년) 임대 완전 폐지, 장기(8년)는 아파트 임대사업 폐지
'20.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대차 3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증액 상한(5%),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1회, 2년) 등

〈서울시 부동산 거래 현황〉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년	월계	20,827	23,450	29,262	26,178	21,467	20,311	24,149	23,916	26,340	33,085	27,771	27,679
	누계	20,827	44,277	73,539	99,717	121,184	141,495	165,644	189,560	215,900	248,985	276,756	304,435
'15년	월계	24,628	26,420	39,946	40,134	37,544	37,041	40,813	32,790	31,655	35,771	33,724	34,776
	누계	24,628	51,048	90,994	131,128	168,672	205,713	246,526	279,316	310,971	346,742	380,466	415,242
'16년	월계	27,333	24,996	29,912	33,705	37,471	37,381	42,880	43,541	34,633	38,986	39,679	39,425
	누계	27,333	52,329	82,241	115,946	153,417	190,798	233,678	277,219	311,852	350,838	390,517	429,942
'17년	월계	28,306	31,075	34,544	34,895	41,277	47,873	53,433	52,313	36,793	26,519	32,341	40,459
	누계	28,306	59,381	93,925	128,820	170,097	217,970	271,403	323,716	360,509	387,028	419,369	459,828
'18년	월계	40,633	34,686	53,145	31,652	33,947	30,027	41,514	34,132	37,426	42,548	28,748	27,056
	누계	40,633	75,319	128,464	160,116	194,063	224,090	265,604	299,736	337,162	379,710	408,458	435,514
'19년	월계	31,024	18,230	25,427	25,649	28,247	29,547	34,956	32,157	28,099	33,391	35,298	45,910
	누계	31,024	49,254	74,681	100,330	128,577	158,124	193,080	225,237	253,336	286,727	322,025	367,935
'20년	월계	41,508	37,413	38,656	28,320	28,491	40,866	53,369	34,583	34,376			
	누계	41,508	78,921	117,577	145,897	174,388	215,254	268,623	303,206	337,582			

2. 세입예산 검토

○ 2021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¹⁾은 전년 당초예산(19조 7,827억 8천 6백만원) 대비 2.5%(4,964억 8천만원) 증액한 20조 2,792억 6천 6백만원임.

※ 2020년도 최종예산(22조 872억 1천 9백만원) 대비 8.2%(1조 8,079억 5천 3백만원) 감액한 수준임.

- 지방세 수입은 전년 예산(19조 5,524억 2천 5백만원) 대비 2.4%(4,712억 8천 1백만원) 증액된 20조 237억 6백만원으로, 재무국 세입의 98.7%을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2,286억 5천 6백만원) 대비 9.2%(252억 7천 3백만원) 증액한 2,539억 3천만원으로, 재무국 세입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세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 상승으로 취득세 4,260억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3,956억원, 차량수요 증가로 자동차세 813억원, 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담배소비세 158억원,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종업원분 증가로 주민세 67억원, 본세 증가로 지방교육세 992억원이 증액하였고,

- 금년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및 자영업자 소득 악화로 지방소득세 2,367억원, 2021년도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입 감소로 지방소비세 2,171억원,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레저세 822억원, 경제침체로 인한 징수여건 악화로 지난년도수입 2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1) 이하 2020년 재무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이 같음(추가경정예산 등 미편성).

※ 세외수입은 송파위례 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85억원을 증액하였고.

저금리로 인한 공공예금이자수입 215억원 및 기타이자수입 1억원, 경기부진 영향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1억원, 삼표산업 이전으로 사용료수입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가. 지방세 수입²⁾

1) 보통세

○ 지방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 등 8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전년 예산(17조 4,951억 3천 5백만원) 대비 2.2%(3,892억 9천 6백만원) 증액한 17조 8,844억 3천 1백만원으로, 지방세 세입 예산의 89.3%(전년도 89.5%)를 차지하고 있음.

가)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의 취득 시 취득자가 납부하는 세입으로, 전년 예산(4조 6,329억 6천 7백만원) 대비 9.2%(4,259억 7천만원) 증액한 5조 589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세입의 25.3%(전년도 23.7%)를 차지하는 세목임.

- 취득세 중 부동산분은 전년 예산대비 9.4%(3,783억 1천 5백만원) 증액, 차량분은 7.7%(476억 5천 5백만원) 증액한 규모임.
- 추계 방법은, 부동산분의 경우 물건 유형별로 주택, 건물 토지로 구분하고, 유형별 '21년 예상 취득세 부과 건수에 예상 취득세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으며,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 매매, 중과 대상 매매, 신축·분양, 기타 취득”으로 취득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추계하고 있음.
- 2021년도 부과건수는 금년 전망건수 대비 주택은 평균 24.04% 감소하고, 건물은 4.65% 감소하며, 토지는 0.5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 이하 2020년 재무국 '지방세 세입'은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이 같음(추가경정예산 등 미편성).

주택 일반 및 중과세 대상 매매에 대하여는 최근 거래량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직전년도(2019년) 부과 건수 감소율 30.6%를 적용하고, 신축·분양에 대하여는 2021년 주택수급 감소율 21.5%를, 기타 사항은 직전년도 감소율 4.1%를 적용하여 최근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2017년 이후 거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2년 평균을 적용하고 있음.

- 취득세 단가는 모든 유형이 금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반 및 중과 대상 매매 3.74%, 신축분양은 5.10%, 기타 11.84%, 건물 2.68%, 토지 5.70%의 증가율을 적용하고 있음.
- 주택 일반 및 중과세 대상 매매에 대하여는 최근 2년 평균 주택매매가격지수(한국감정원) 증감률을 적용하였고, 신축·분양 및 기타는 최근 3년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경우 최근 2년 평균 기준시가 증감률을, 토지에 대하여는 최근 2년 평균 지가지수(한국감정원) 증감률을 적용하고 있음.

부동산 취득세 추계 방법

○ 물건 유형별 추계 내역

주택(A)	건물(B)	토지(C)	'21년 추계액(A+B+C)
2,224,379	1,849,099	318,461	4,391,939

○ 산출방법: '21년 물건 유형별 예상 신고건수 x 예상 취득세 단가

- 주택은 취득 유형별로 “매매, 신축·분양, 기타”로 구분하고, 매매는 일반매매와 중과세 대상으로 세분화

○ 물건 유형별 상세 산출 내역

① 주택

(단위 : 백만원)

취득 유형	'21년 예상 부과 건수 (A)	취득세 단가 (B)	'21년 예상 부과액 (C=A X B)	징수율 (D)	'21년 추계액 (C X D)
합 계	180,752	-	2,231,071	-	2,224,379
매매	일반	11.58	1,101,455	99.7%	1,098,151
	중과	39.12	253,458		252,698
신축·분양	10.49	408,806	407,580		
기타	11.63	467,352	465,950		

※ 징수율: 최근 2년 평균

- '21년 예상 부과 건수: '20년 유형별 예상 부과건수 x '21년 예상 증감률

【'21년 주택 취득세 예상 부과 건수】

취득 유형	'20년 예상 건수	'21년 예상 증감률	'21년 예상 건수
합 계	237,965 건	-24.04%	180,752 건
매매(일반)	137,095 건	-30.62%	95,117 건
매매(중과세)	9,339 건	-30.62%	6,479 건
신축분양	49,645 건	-21.5%	38,971 건
기타	41,886 건	-4.06%	40,185 건

- ㄱ) 주택 매매(일반·중과세) 및 기타는 최근 거래량 감소 확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직전년도(2019년) 취득세 부과건수 증감률을 적용

【'16~'20년 주택 취득세 부과 건수】

(건, %)

유형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매	부과건수	192,823	172,445	156,887	108,848
	증감건수	-8,905	-20,378	-15,558	-48,039
	증 감 률	-4.41	-10.57	-9.02	-30.62
기타	부과건수	27,471	26,982	31,167	29,901
	증감건수	-4,894	-489	4,185	-1,266
	증 감 률	-15.12	-1.78	15.51	-4.06

- ㄴ) 신축·분양은 내년도 주택수급 감소율을 적용.

※ 주택수급: (20년) 7.9만호 → (21년) 6.2만호 (-21.5%↓)

- 취득세 단가: '20년 유형별 취득세 단가에 '21년 예상 증감률을 적용

【'21년 주택 취득세 예상 단가】

취득 유형	'20년 단가	'21년 예상 증감률	'21년 예상 단가	비고
매매(일반)	11.16	3.74%	11.58	최근 2년 평균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 증감률
매매(중과세)	37.71	3.74%	39.12	
신축분양	9.98	5.10%	10.49	최근3년 평균 취득세 단가 증감률
기타	10.40	11.84%	11.63	

② 건물 및 토지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21년 예상 부과 건수 (A)	단가 (B)	'21년 예상 부과액 (C=A X B)	징수율 (D)	'21년 추계액 (C X D)
건물	70,924	26.15	1,854,663	99.7%	1,849,099
토지	16,116	19.82	319,419		318,461

▪ 예상 부과 건수: '20년 유형별 예상 부과건수 x '21년 예상 증감률

【'21년 건물·토지 취득세 예상 부과 건수】

구분	'20년 예상 건수	'21년 예상 증감률	'21년 예상 건수
건물	74,383 건	-4.65%	70,924 건
토지	16,033 건	0.52%	16,116 건

※ 규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7년 이후 거래 증감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2년 평균 취득세 부과건수 증감률을 적용

▪ 취득세 단가) '20년 유형별 취득세 단가 x '21년 예상 증감률

【'21년 건물·토지 취득세 예상 단가】

구분	'20년 단가	'21년 예상 증감률	'21년 예상 단가	비고
건물	25.47	2.68%	26.15	최근 2년 평균 건물기준시가 증감률
토지	18.75	5.70%	19.82	최근2년 평균 한국감정원 지가증감률

※ 규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7년 이후 가격 증감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2년 평균을 적용

차량 취득세 추계 방법

(단위 : 백만원)

'20년 부과전망액	X	등록대수 신장율	X	징수율	=	'21년 추계액
665,735		100.28%		99.91%		666,998

※ '20년 부과전망액: 665,136(징수전망액) ÷ 99.91%(3년 평균 징수율) = 665,735백만원

※ 등록대수 신장율은 최근 세입 증가 추세 반영을 위해 최근 2년 평균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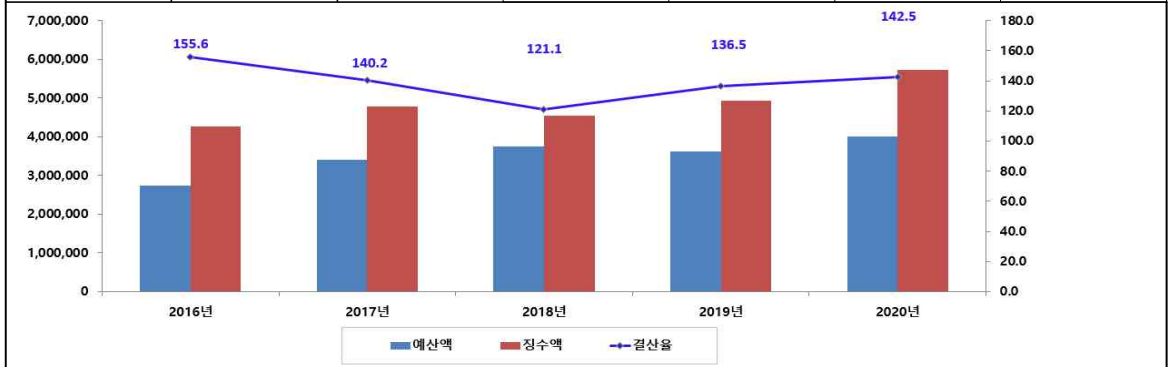
※ '징수율은 최근 3년 평균 징수율을 적용

□ 최근 5년 취득세(부동산) 예산 및 결산 현황

○ 부동산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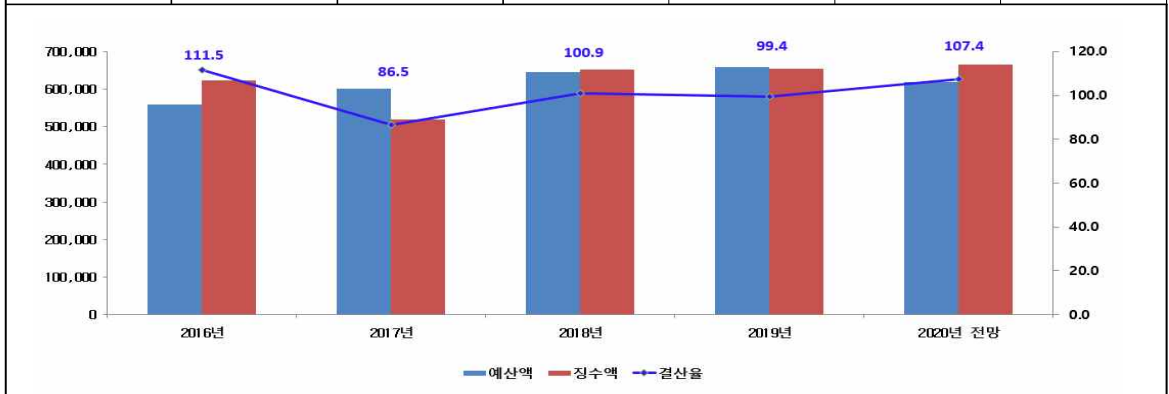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전망	'21년 추계
예 산 액	2,743,833	3,406,022	3,748,089	3,616,039	4,013,624	4,391,939
징 수 액	4,269,792	4,775,578	4,539,452	4,937,200	5,718,292	
결 산 율	155.6	140.2	121.1	136.5	142.5	



○ 차량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전망	'20년 추계
예 산 액	558,319	601,032	646,534	657,749	619,343	666,998
징 수 액	622,317	519,633	652,285	653,607	665,136	
결 산 율	111.5	86.5	100.9	99.4	107.4	



○ 재무국은 7.10.대책³⁾에 따른 세부담 증가 및 임대사업자 폐지 영향과 정부의 자금출처조사 강화 등으로 매수 매도 심리가 위축되고 가계소득 감소 및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3)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등의 내용임.

- 2020년도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2021년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되었는바,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년 9월 현재 거래량은 36만 8천건으로, 전년 동기 28만 6천건 대비 28.4% 증가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중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0(2020.7.10., 관계부처 합동)

※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중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 당초 양도소득세 중과 확대 안 -

①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주택·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②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또한, 최근 5년 간 평균 40%(1조 3,425억원) 수준으로 초과징수 되어온 부동산 취득세 결산 추이로 볼 때, 2020년 부동산 취득세 징수전망액 (5조 7,183억원, 예산대비 42.5% 초과징수 전망)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23.2%, △1조 3263억원) 본 예산안 편성(4조 3,919억원)은 지나치게 보수적 관점에서 부동산시장을 분석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최근 5년 간 부동산 취득세 추계액 및 결산액 차이〉

(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전망	'21년 추계
예산액	2,743,833	3,406,022	3,748,089	3,616,039	4,013,624	4,391,939
징수액	4,269,792	4,775,578	4,539,452	4,937,200	5,718,292	
결산율	155.6	140.2	121.1	136.5	142.5	
초과징수액	1,525,959	1,369,556	791,363	1,321,161	1,704,668	

※ 2020년 9월 실적: 4,720,665백만원

- 연도별 추계 산식

연도	추계 산식
2017년	'16년 부과전망액 × 유형별점유비 × 거래량증감률 × 과표신장률 × 징수율
2018년	'17년 부과전망액 × 거래량증감율 × 징수율
2019년	'18년 부과전망액 × 유형별점유비 × 거래량증감율 × 과표신장율 × 징수율
2020년	'19년 징수전망액 × 유형별점유비 × 거래량증감율 × 과표신장율
2021년	'21년 유형별 예상 부과건수 × '21년 유형별 예상 취득세 단가

- 연도별 적용 지표 내역

연도	유형별 점유비	거래량 증감률	과표 신장율	징수율	비고
2017년	직전년도	'12년 거래증감률*	최근3년 평균	최근3년 평균	*'17년 정책과 유사한 정책 적용 기간
2018년	-	'01~'02년 평균거래량 대비 '03~'06년 평균 거래량 증감률*	※ 부동산 규제정책 발표로 거래 가격이 불확실하여 과표신장을 미반영 ¹⁾	최근5년 평균	*서울지역 투기지역 지정 전('01년~'02년)과 지정 후('03년~'06년) 기간의 거래량 증감률 적용
2019년	최근3년 평균	'04~'08년 평균*	(주택)최근2년평균 (건물)최근3년평균 (토지)최근3년평균	최근5년 평균	*'18년 정책과 유사한 정책 적용 기간
2020년	최근2년 평균	'08~'09년 평균*	최근2년평균	-	*'19년 시장상황과 유사한 기간
2021년	-	(주택) ·매매(일반·중과세) 기타:'19년 ·신축·분양:21년 수급 감소율 (건물·토지) '18~'19년 평균	(주택) ·매매(일반·중과세) 최근 2년 평균 ·신축·분양 및 기타: 최근 3년 (건물·토지) ·최근 2년 평균	최근2년 평균	-

1) 2017.8.2. 정부에서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정책 발표

나) 주민세

○ 주민세는 정액으로 과세하는 **균등분**(개인세대주, 개인 및 법인사업자)과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재산분**(사업장 면적) 및 **종업원분**(종업원 총 급여액)으로 구분되는 지방세로, **전년 예산(5,944억 6천 5백만원) 대비 1.1%(66억 6천 9백만원) 증액한 6,011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세입의 3.0%(전년도 3.0%)를 차지하는 세목임.

※ “균등분”은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과세대상이 나뉘에 따라 과세대상별 '20년 부과 전망액을 기준으로 세액신장률과 징수율을 반영하여 538억 1천 6백만원으로 추계(전년대비 4.0% 증가)하고 있고,

※ “재산분”은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사업자수 신장율을 적용하여 259억 2천 2백만원으로 추계(전년대비 △6.0% 감소)하고 있으며,

※ “종업원분”은 종업원 월 총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내년도 예상 임금 인상율(101.5%)을 반영하여 5,213억 9천 6백만원으로 추계(전년대비 0.6% 증가)하고 있음.

○ 주민세는 매년 세대수 및 사업자 증가로 세입 증가 추세가 지속 중인 세목으로, 세대수·사업자수 증가세에 비추어 볼 때, 금년 대비 세입 증가율을 1.1%로 보아 추계한 것은 다소 보수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최근 4년 간 세대수, 개인·법인 사업자 현황〉

(단위 : 세대, 개,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주민세	496,310	539,899	579,017	592,190
(증감률)	(102.33)	(103.13)	(101.45)	(103.84)
세대수	4,220,082	4,263,868	4,304,243	4,391,545
(증감률)	(100.72)	(101.04)	(100.95)	(102.03)
개인사업자	455,552	450,407	444,574	456,048
(증감률)	(113.08)	(98.87)	(98.70)	(102.58)
법인사업자	274,208	295,860	298,062	316,859
(증감률)	(105.99)	(107.90)	(100.74)	(106.31)

□ 산출 내역(①+②+③) : 601,134 백만원

① 주민세 균등분 : 53,816 백만원

구분	'20년 부과 전망액	신장율	징수율	'21년 추계액
개 인	18,113	101.88%	86.78%	16,014
개인사업자	22,790	101.40%	92.23%	21,313
법인 균등	19,263	101.32%	84.6%	16,489

② 주민세 재산분 : 25,922 백만원

'20년 징수전망액	×	사업자수 신장율	=	'21년 추계액
25,285		102.52%		25,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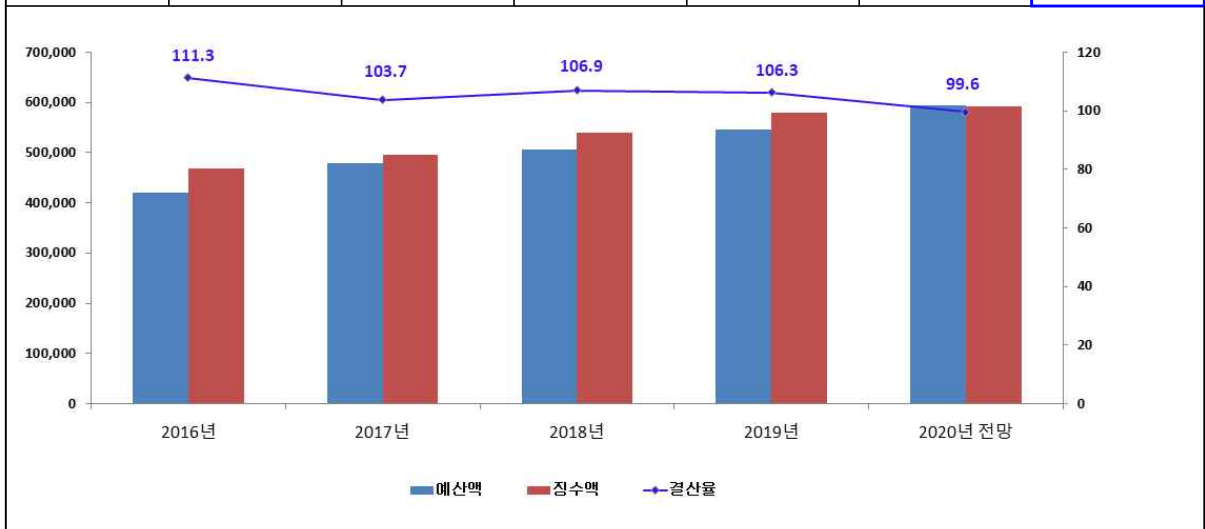
③ 주민세 종업원분 : 521,396 백만원

'20년 징수전망액	×	임금인상율	=	'21년 추계액
513,691백만원		101.5%		521,396백만원

□ 최근 5년 주민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전망	'20년 추계
예산액	420,847	478,803	505,197	544,955	594,465	601,134
징수액	468,308	496,310	539,899	579,017	592,190	
결산율	111.3	103.7	106.9	106.3	99.6	



다)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2021년 국세 예산안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5조 4,331억 8천만원) 대비 4.3%(2,366억 5천만원) 감액한 5조 1,964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세입의 가장 큰 비중인 26.0%(전년도 27.8%)를 차지하는 세목임.

○ 본 세목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분 및 법인 소득분과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매월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특별징수분, 부동산 등의 양도에 과세하는 양도소득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2014년까지는 국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국세의 부가세목이었으나,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세입은 증가 추세에 있는 세목임.

※ 종합소득분은 전년 소득을 당해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금년 코로나 19 경기부진에 따른 자영업자 등 소득 악화를 고려하여 '20년 예산(7,452억 7천 1백만원)대비 12.4% 감소한 6,525억 9천 1백만원으로,

※ 양도소득분은 '17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20년 예산(5,603억 3천만원) 대비 13.1% 증가한 6,336억 4천만원으로,

※ 법인소득분은 전년도 법인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금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수출 및 내수부진으로 법인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전년 예산(1조 5,653억 8천 7백만원) 대비 19.5% 감소한 1조 2,605억 7천 1백만원으로,

※ 특별징수분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 및 급여에서 특별징수하는 세목으로 내년도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상승 및 취업자수 증가로 '20년 예산(2조 5,620억 9천 2백만원) 보다 3.4% 증가한 2조 6,496억 2천 8백만원을 추계하고 있음.

○ 추계방법은 2021년 정부 국세 예산안을 기초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과 지방세 중 서울시 점유비를 적용하여 2021년 추계액을 산출하고 있음.

- 금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으로 법인 및 자영업자 소득 감소 영향을 반영하여 종합소득분과 법인소득분을 전년보다 감소 편성하였으며,
- 특별징수분의 경우 법인 등 수익 악화에 따른 고용위축으로 증가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한, 법인소득분의 경우 국세와 지방소득세 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차이로 적용되지 않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금년 대법원에서 패소하며 대량 환급될 예정으로, 2021년도 환급 예상액 887억원을 추가 감소 요인으로 반영하고 있음.

〈2021년 소득세의 지방소득세 서울시 점유비 적용 내역〉

구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특별징수분
국세 예산	16조 4,791억원	16조 8,857억원	53조 3,173억원	56조 4,527억원
지방세 점유비	10.27%	10.25%	10.38%	10.21%
서울시점유비	38.56%	36.61%	24.38%	45.97%

〈2021년 시세 관련 국세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세 목 명	2021년 예산(A)	2020년 예산(B)	2020년 대비	
			증감액 (C=A-B)	비율(C/B)
종합소득세	16조 4,791억원	17조 4,086억원	△9,295억원↓	△5.3%↓
양도소득세	16조 8,857억원	16조 7,621억원	1,236억원↑	0.7%↑
원천징수분	56조 4,527억원	54조 2,471억원	2조 2,056억원↑	4.1%↑
법 인 세	53조 3,173억원	64조 4,190억원	△11조 1,017억원↓	△17.2%↓

※ 법인세 등 국세도 '21년 예산 감소 편성 : (법인세) △17.2↓, (종합소득세) △5.3↓

※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 : ('20년) △1.3%↓ ➔ ('21년) 2.8%↑

※ '20년 상반기 법인 실적 감소 : 전년동기 대비 △11.08%↓

- 다만, 지방소득세 결산 추이를 보면 매년 10% 내외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는바, 국세 추계에 의존하여 국세 대비 지방세 점유비와 서울시 점유비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해온 추계보다는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추계방식 개발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소득세 결산 추이] (단위: 백만원,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전망	'21년 추계
예 산 액	4,131,153	4,229,767	4,848,309	5,238,562	5,433,080	5,196,430
징 수 액	4,189,316	4,639,565	5,494,275	5,805,876	5,723,954	
결 산 율	101.4	109.7	113.3	110.8	105.4	

-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금년 대법원에서 패소에 따라 2021년도 환급 예상액 887억원을 2021년 예산액 추계 시 감소요인으로 적시 하고있으나, 산출 내역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투자, 결혼금) 적용 여부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바, 철저한 분석과 면밀한 소송 대응을 통하여 세수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산출 내역 : 5,196,430백만원

○ 유형별 산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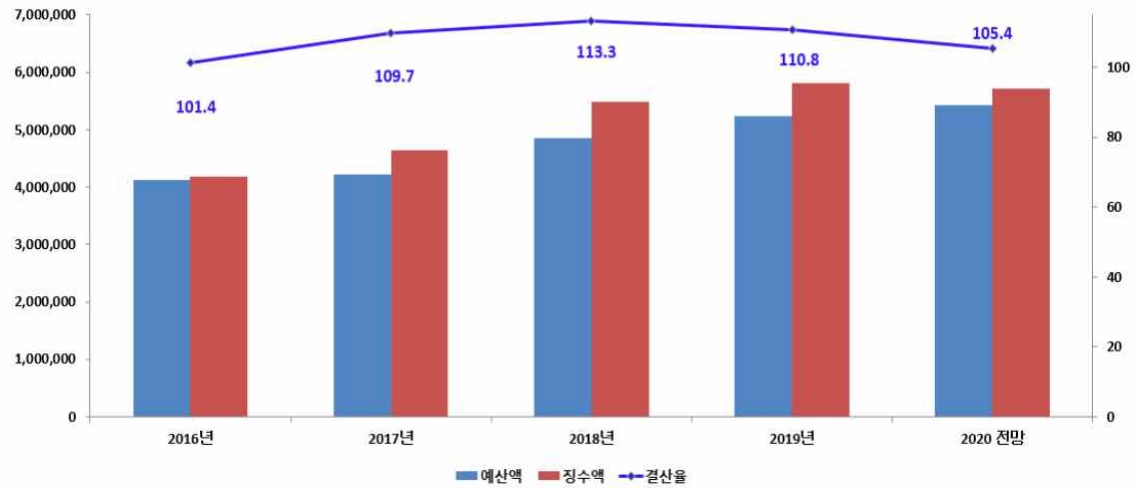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국세예산	지방세 비율	서울시 점유비	2021년 추계액
합 계	143,134,800	-	-	5,196,430
종합소득분	16,479,100	10.27%	38.56%	652,591
양도소득분	16,885,700	10.25%	36.61%	633,640
법인소득분	53,317,300	10.38%	24.38%	1,260,571
특별징수분	56,452,700	10.21%	45.97%	2,649,628

최근 5년 지방소득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전망	'21년 추계
예 산 액	4,131,153	4,229,767	4,848,309	5,238,562	5,433,080	5,196,430
징 수 액	4,189,316	4,639,565	5,494,275	5,805,876	5,723,954	
결 산 율	101.4	109.7	113.3	110.8	105.4	



라) 지방소비세

- 2021년 지방소비세는 전년 예산(2조 414억 2천 7백만원) 대비 10.6% (2,171억 4천 7백만원) 감액한 1조 8,242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세입의 9.1%를 차지하는 세목임.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소비지출분(15%)과 취득세 보전분(6%)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의 21%를 지역별 안분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세목임.

※ 추계방법은 소비지출분과 취득세 보전분으로 구분하여 2021년 부가가치세 예산액에 서울시 안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1년 예상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편성된 정부의 '21년 부가가치세 예산(66조 6,535억원)은 '20년 대비 △2조 2,175억원(△3.2%) 감소한 수준인바, 2021년도 지방소비세 세입 감소를 예상하고 있음.

- 2020년부터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소비지출분) 세율이 2018년 5%에서, 2019년에는 9%, 2020년에는 최종 15%로 인상되었으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 하면서 이에 따른 전환사업비 4.5조원을 인상된 소비지출분('19~'20년 10%) 지방소비세액에서 보전('20~'22년, 3년 계획)함에 따라,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 사업이 미미한 서울시의 경우 4.5조원 중 267억원에 불과한 금액을 보전받게 되어 서울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입증대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지방소비세 안분 구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

(국세) 부가가치세 79%		(지방세) 지방소비세 21%		
↓				
구분	안분방식			
6%p	취득세 감소분 취득세 감소비율(98%) + 사회복지수요(2%)	지방교육세 감소분 취득세 감소비율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19.24%) 시·도 몫 시·군·구 몫	교육 전출금 공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20.27%)
5%p	시·도 소비지출 x 가중치(1:2:3) 【시·도】 지방소비세			
10%p	① 전환사업 보전분(3.6조/정액) 시·도 (약2.8조) 시·군·구 (약0.8조)	② 재정조정분(0.9조/정액) 조정교부금 (약0.8조) 교육전출금 (약0.1조)		③ 잔여분 시·도 소비지출 x 가중치(1:2:3)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 효과 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전망	2021년 전망
합 계		1,928,261	1,750,446	1,824,280
소 비 지출분	소 계	1,070,902	1,023,889	1,074,444
	당초(5%)	856,722	525,953	542,804
	인상(4+6%)	214,180*	497,936**	531,640**
취득세감면보전분(6%)		857,357	726,557	749,836

* 2019년 지방소비세 4%p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액

** 2020년 지방소비세 6%p 추가 인상으로 10% 인상된 지방소비세

-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지방소비세 재원인 부가가치세 세입 감소까지 가중되어 세입 여건은 크게 악화된 상황이며, [지방소비세 결산율 추이] (단위: 백만원,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전망	'21년 추계
예 산 액	950,428	1,055,931	1,212,695	1,794,673	2,041,427	1,824,280
징 수 액	1,092,322	1,305,360	1,399,063	1,928,261	1,750,446	-
결 산 율	114.9	123.6	110.4	107.4	85.7	-

- 2021년 부가가치세 예산(안)이 2020년 대비 △2조 2,175억원(△3.2%) 감소됨과 더불어 매년 지속적인 안분을 하락 영향까지 가중되어 6% 추가 인상('20년) 전인 2019년 결산액 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021년도 정부 부가가치세 예산(안)〉

연도	2021년(A)	2020년(B)*	증감(A-B)	증감률
금액	66조 6,535억원	68조 8,710억원	△2조 2,175억원	△3.2% ↓

*2020년 본예산

〈서울시 적용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단위 : %)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소비지출분 (5% 및 잔여분)	12.867	13.646	13.746	13.843	14.076
취득세 보전분(6%)	24.487	26.633	27.198	25.085	22.688
전환사업 보전분	267억원	해당 없음 ('20년부터 적용)			

- 이는 국가사업의 지방 이관 소요액을 지방 재원인 지방소비세로 충당시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결과로서, 향후 2차 지방 재정분권 추진에서는 이와 같은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 최근의 경기 침체에 따른 타 지역 지방 재정 악화 등을 구실로 당초 2022년까지로 계획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요액을 지방소비세로 보전하는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지방소비세 개요 (21년 추계 기준)>

-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납입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납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납부('20년 납입관리자 : 경북도지사)

① 소비지출 비율(15%) 분

- '10.1.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세목으로 부가가치세(국세)의 15% 적용[5%('18년)→9%('19년)→15%('20년)]
- 안분방법
 - 1) 전국지방소비세(5%) × 지역별 안분비율
 - 2) 전국지방소비세(10%) 중 4.5조원: 균특회계 전환사업 보전비율에 따라 지급
 - 3) 전국지방소비세(10%) 중 4.5조원 차감 후 잔액 × 지역별 안분비율

② 취득세 감면 보전(6%) 분

- '13.12.26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영구인하로 감면된 취득세 보전 성격
- 안분방법 : 전국지방소비세(6%)-[지방교부세(19.24%)+지방교육청 교부금(20.27%)] × 서울시 안분비율 = 지방소비세 세입

산출 내역 : 2,041,427 백만원

① 정부의 부가가치세 예산을 지방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환산

(단위 : 백만원)

'21년 부가세 예산		지방소비세 세율		'21년 부가세 예산
66,653,500	÷	79%	=	84,371,519

② 지방소비세 소비지출분 추계액(㉠+㉡+㉢) : 1,074,444백만원

㉠ 5%분 : 542,8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21년 부가세 예산		세율		서울시 안분율		소비지출분(5%) 추계액
84,371,519	x	5%	x	12.867%	=	542,804

㉡ 균특회계 전환사업 보전분 : 26,727백만원

※ (전국) 균특회계 전환사업 보전액 3,568,062백만원 / 재정보전액 944,999백만

㉢ 잔여분 : 504,913백만

(단위 : 백만원)

'21년 부가세 예산		세율		균특회계 전환사업 보전		자치구, 교육청 전출금 보전액		서울시 안분율		소비지출 분 (10%) 추계액
84,371,519	x	10%	-	3,568,062	-	944,999	x	12.867%	=	504,913

③ 지방소비세 취득세 보전분 추계액 : 749,836백만원

(단위 : 백만원)

'21년 부가세 예산		세율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교육청 전출금 보전액		서울시 안분율		취득세보전분 (6%) 추계액
84,371,519	x	6%	-	973,985	-	1,026,126	x	24.487%	=	749,836

▶ 지방교부세 감소분: 84,371,519 x 6% x 19.24% = 973,985백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84,371,519 x 6% x 20.27% = 1,026,126백만원원

④ 지방소비세 추계액(②+③) : 1,824,28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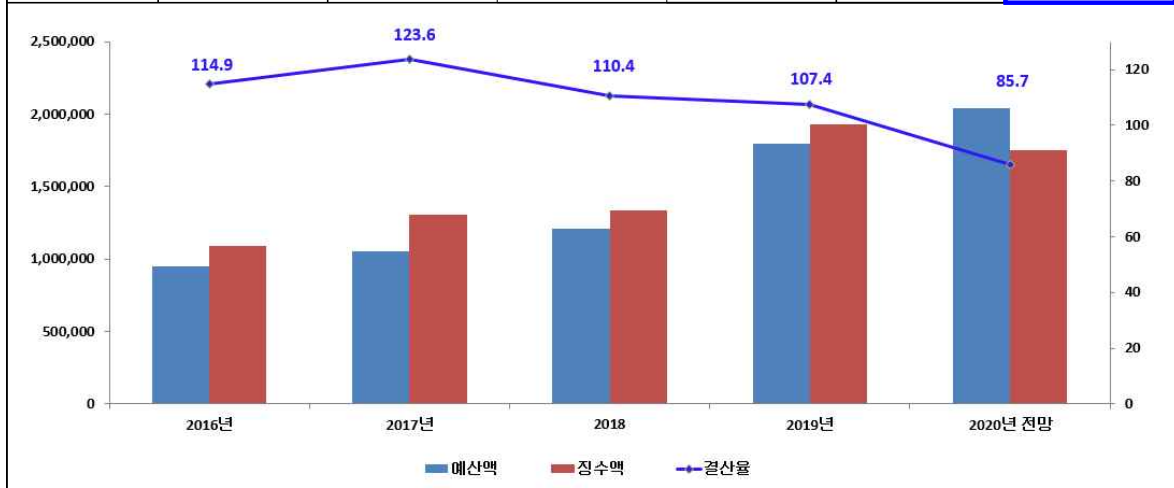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분	취득세 보전분(6%)	소비지출분 등(15%)				합계
		소계	5%분	전환사업 보전분	잔여분	
금액	749,836	1,074,444	542,804	26,727	504,913	1,824,280

□ 최근 5년 지방소비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전망	'21년 추계
예 산 액	950,428	1,055,931	1,212,695	1,794,673	2,041,427	1,824,280
징 수 액	1,092,322	1,305,360	1,399,063	1,928,261	1,750,446	-
결 산 율	114.9	123.6	110.4	107.4	85.7	-



마) 자동차세

- 2021년 자동차세 예산은 전년 예산(1조 1,049억 7천 5백만원) 대비 7.3%(812억 6천 6백만원) 증액한 1조 1,862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세입의 5.9%를 차지하는 세목임.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의 ‘소유분 자동차세’와 도로·교통관리,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부담 성격의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성되는 세목임.

※ 소유분 자동차세는 2020년 부과 전망액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세액 신장율 100.81%와 최근 3년 평균 징수율 90.06%를 반영하여 2020년 예산 대비 171억 2천 6백만원(2.7%)을 감소 편성하고 있음.

※ 주행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보전분과 유가보조금 보전분으로 구분하여 자동차세 보전분은 전국 자동차세 보전액(9,830억원)을 기준으로 서울시 2020년 하반기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자동차세 보전분 안분비율 현황〉

(단위 : %)

연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6월	7~12월	1~6월	7~12월	1~6월	7~12월	1~6월	7~12월	1~6월	7~12월
안분율	15.3935	15.1274	15.8231	15.3935	16.1876	15.8231	16.6450	16.1876	16.9935	16.3648

※ 유가보조금 보전분은 2021년도 경제회복에 따른 석유류 수요 회복으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액에 2020년 서울시 안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음.

- '21년도 정부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은 '20년 예산 15조 4,636억원보다 1.5%(2,379억원) 증가한 15조 7,015억원으로 편성됨.

○ 소유분 자동차세는 2018년 이후 매년 예산 대비 세입결손이 발생되고 있는바,

[자동차세(소유분) 결산율 추이]

(단위: 백만원,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추계
예 산 액	545,488	562,675	596,200	623,104	632,191	615,065
징 수 액	575,204	592,390	593,961	602,174	610,123	
결 산 율	105.45	105.28	99.62	96.64	96.51	

- 소유분 자동차세의 경우 세입 변동성이 크지 않은 세목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정확한 세입여건 분석을 통한 세입 추계에 보다 면밀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산출 내역

① 소유분 자동차세 산출 내역: 615,065 백만원

'20년 부과전망액	×	세액신장율	×	징수율	=	2021년 추계액
677,463		100.81%		90.06%		615,065

② 주행분 자동차세 : 571,176 백만원

- 자동차세 보전분 : 151,318 백만원

자동차세 보전분 안분 총액	×	서울시 안분율	=	2021년 추계액
983,000		15.1274%		148,702

- 유가보조금 보전분 : 422,474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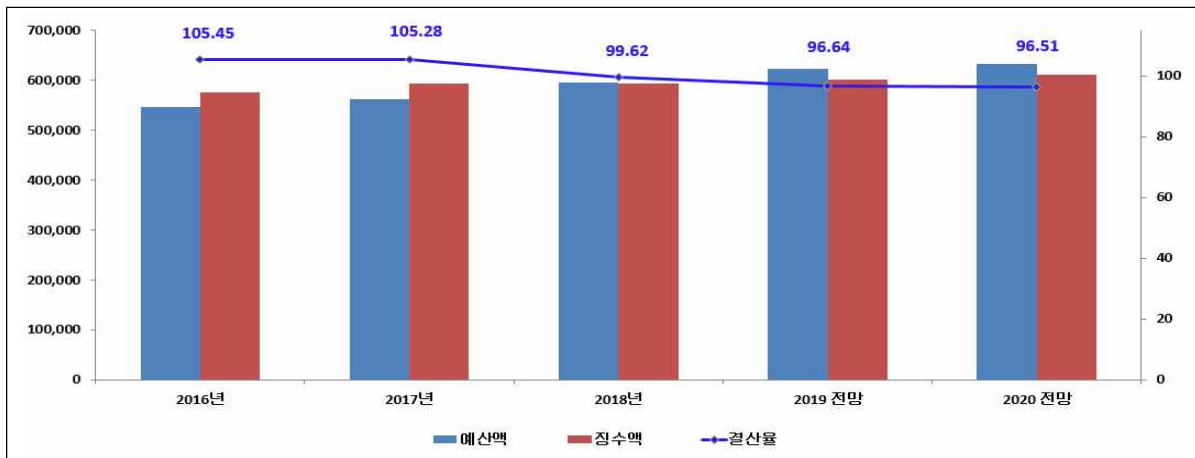
'21년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액		15,701,500
(X) 주행분 세율	X 26%	4,082,390
(-) 자동차세 보전분 전국 안분액	- 983,000	3,099,390
(X) 서울시 안분율	X 13.6309%	422,474

□ 최근 5년 자동차세 예산 및 결산 현황

○ 소유 분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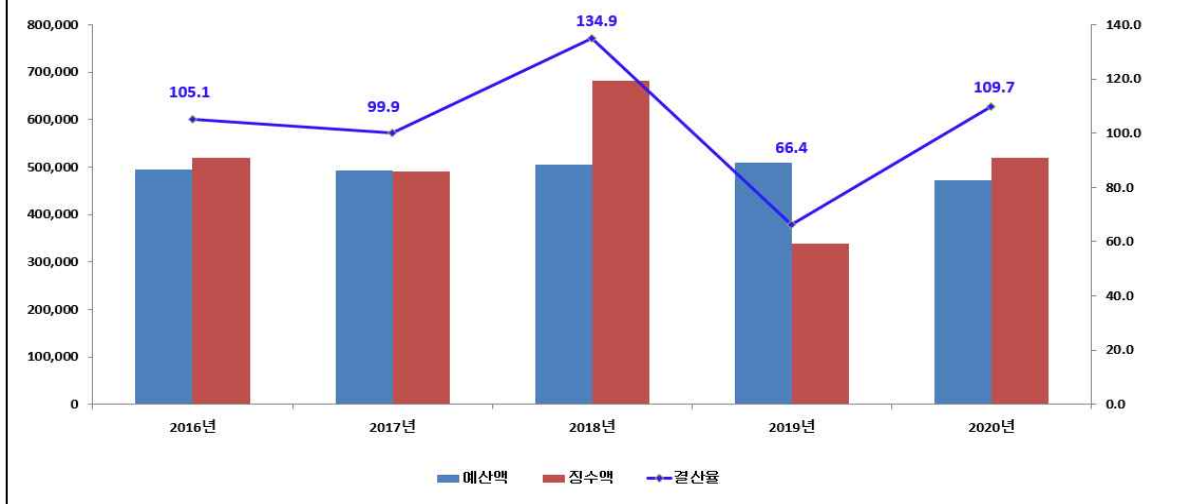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추계
예 산 액	545,488	562,675	596,200	623,104	632,191	615,065
징 수 액	575,204	592,390	593,961	602,174	610,123	
결 산 율	105.45	105.28	99.62	96.64	96.51	



○ 주 행 분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추계
예 산 액	493,846	491,865	505,438	508,988	472,784	571,176
징 수 액	518,939	491,393	681,584	337,930	518,491	
결 산 율	105.08	99.9	134.9	66.39	109.70	



바) 레저세

○ 2021년 레저세 예산은 전년 예산(1,248억 7천 3백만원) 대비 65.8% (821억 7천 1백만원) 감액한 1조 427억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세입의 0.2%를 차지하는 세목임.

○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의 입장객을 대상으로 투표권 발매금액의 10%를 징수하는 세목으로, 금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과세 대상 경기 중단으로 세수 여건이 악화 되어, 금년에도 예산(1,249억원) 대비 17.1%(213억 5천만원) 징수에 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레저세 결산율 추이]

(단위: 백만원,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전망	'21년 추계
예 산 액	129,457	126,768	132,083	131,021	124,873	42,702
징 수 액	138,958	140,861	135,150	128,189	21,350	
결 산 율	107.3	111.1	102.3	97.8	17.1	

○ 추계방법은 2020년 경기 운영 기간인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징수액을 기준으로 내년 경기운영 기간을 6개월로 예상하여 추계하고 있으나,

- 금년 말까지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어 2021년 세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세입 추계 방식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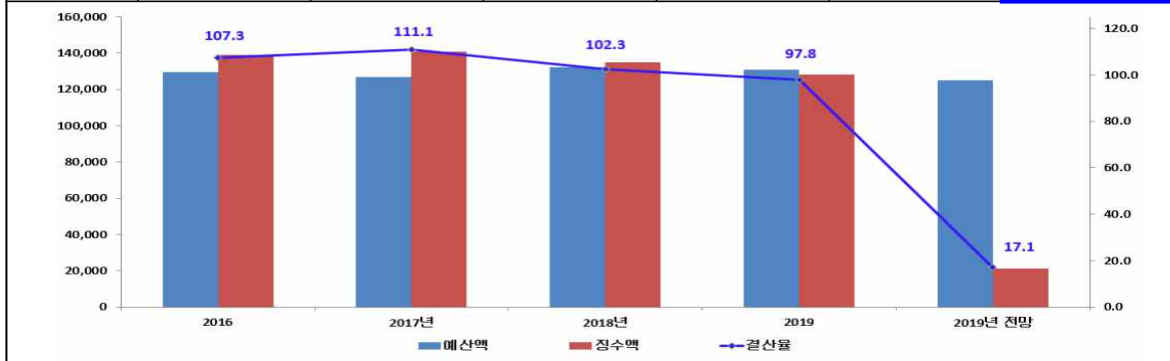
산출 내역 : 42,702 백만원

구분	월평균 징수액	예상 경기월수 6개월	=	'21년 추계액
경마	3,860			23,160
경륜	2,617			15,702
경정	640			3,840

최근 5년 레저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전망	'21년 추계
예산액	129,457	126,768	132,083	131,021	124,873	42,702
징수액	138,958	140,861	135,150	128,189	21,350	
결산율	107.3	111.1	102.3	97.8	17.1	



사)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소비 행위를 세원으로 하는 세목으로, 2021년 담배소비세 예산은 전년 예산(5,643억 4천 9백만원) 대비 2.8%(158억 1백만원) 증액한 5,801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세입의 2.9%를 차지하는 세목임.

- 담배소비세 세입은 2015년 담뱃값 인상 등 정부의 금연정책 영향으로 매년 감소세가 지속 중이었으나,

[담배소비세 결산을 추이]

(단위: 백만원,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전망)	'21년 추계
예 산 액	499,676	634,255	624,383	565,175	564,349	580,150
징 수 액	661,192	634,736	607,910	565,435	579,541	
결 산 율	132.3	100.1	97.4	100.0	102.7	

- 금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으로 면세점 수요가 내수 구매로 전환되며 3분기말 현재까지 이례적인 세입 증가로 금년 예산 대비 초과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년 9월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은 4,5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4억원 (7.7%, 324억원) 증가하였음.

〈'19~'20년 3분기 전국 담배판매량(누계)〉

(단위 : 백만갑)

구 분	합계	궤련	전자담배
2019년	2,602.4	2303.3	299.1
2020년	2,748.4	2463.6	284.8
증감량	146.0	160.3	△14.3
증감률	5.61% ↑	6.96% ↑	△4.78% ↓

※ 전자담배 판매량 중 궤련형 전자담배 비중은 99%로 기타 CSV등 기타 비중은 미미
 ※ 출처: 기획재정부 2020년 1~3분기 담배 시장 동향('20.10.30.)

○ 한편, 재무국은 2021년 예산 증액 편성 사유를 “뿌리, 줄기 추출” 담배가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어 세입이 증가(예산액 122억원)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담배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새로운 과세대상이 추가된다고 하여 세입의 증대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628원 → 1,259원으로 2배 인상 되나, 점유율이 1% 미만 점유율로 세율 인상 효과는 미미함.

산출 내역 : 580,150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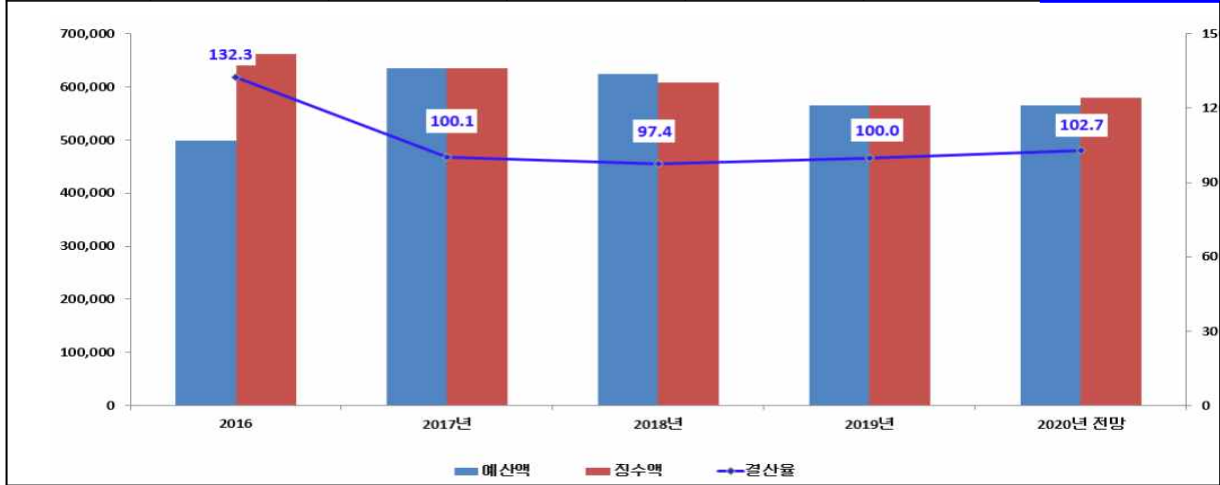
'20년 징수전망액 579,541 백만원	X	흡연 증감률 98.0%	+	특수 요인* 12,200 백만원	=	'21년 추계액 580,150 백만원
---------------------------	---	-----------------	---	----------------------	---	-------------------------

*'21년도 과세대상 추가(뿌리, 줄기 추출 담배)에 따른 세입 증가 예상액

최근 5년 담배소비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추계
예 산 액	499,676	634,255	624,383	565,175	564,349	580,150
징 수 액	661,192	634,736	607,910	565,435	579,541	
결 산 율	132.3	100.1	97.4	100.0	102.7	



아) 재산세

- 2021년 재산세 예산은 전년 예산(2조 9989억 9천 9백만원) 대비 13.2% (3,955억 5천 8백만원) 증액한 3조 3,945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세입의 17.0%를 차지하는 세목임.

- 재산세는 특별시분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으로 구분되고, 특별시분 재산세는 자치구 자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7년 7월 신설되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징수하여 전액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고 있으며,

-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부가 과세되는 세목임.

※ 특별시분 1조 6,343억원, 도시지역분 1조 7,602억원으로 추계

※ “특별시분 재산세”는 2021년도 25개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선박 및 항공기 제외)을 합산하여 2021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 비율(50%)을 적용하여 1조 6,343억 2천 6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15.5% 증가)을 편성하고 있고,

※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매년 지속 중인 공시가격 상승세가 반영된 세액신장율을 반영하여 1조 7,602억 3천 1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11.1% 증가)을 편성하고 있음.

○ 재산세는 매년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지속되며 가장 안정적인 세입 추세를 보이는 세목이나,

- 2021년 예산이 편성된 후 정부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정책 등이 발표(2020.11.3.)되는 등 세입 추계 변수가 확대된 상황으로,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면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세부담 상한 적용 방식 미확정, 1주택자 파악 등을 위한 전국 과세자료 확보 불가 등으로 재산세 인하 영향은 2021년 예산 추계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국토교통부 '20.11.3. 발표)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 3년('21~'23년)간 한시 적용 예정

- 한편, 정부의 재산세 인하 발표에 앞서 서초구의 일방적인 탄력세율 적용 발표로 큰 혼란이 야기된 바, 이는 서울특별시세와 자치구세의 혼용도 하나의 사유로 보여지며, 제도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산세 세입 정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 등 대안 마련을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목적세

- 지방세 중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구성되며, 전년 예산(1조 8,352억 1천 2백만원) 대비 5.6%(1,030억 5천 8백만원) 증액한 1조 9,382억 7천만원으로, 지방세 세입 예산의 9.7%(전년도 9.3%)를 차지하고 있음.

가) 지역자원시설세

- 2021년 지역자원시설세 예산은 전년 예산(3,009억 2천 5백만원) 대비 1.2%(38억 4천 3백만원) 증액한 3,047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세입의 1.5%를 차지하는 세목임.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소방사무 제반비용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구분되며,

- 2021년부터 과세목적 및 과세대상 명확화를 위해 기존 “특정자원분”을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으로 세분화하고 기존 “특정부동산”분은 “소방분”으로 세목 체계가 개편된바 있음.

※ 개편 후 “특정자원분”은 지하수, 지하자원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2021년 예산은 1억 9천만원을 편성하고, 기존 특정자원분 과세대상 중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신설되는 “특정시설분”은 11억 6천 4백만원을,

소방시설에 따른 이익을 받는 건물 및 선박에 부과되는 “소방분”(기존 특정부동산분)은 전년보다 0.9% 증가한 3,034억 1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특정자원분” 과세대상은 지하수뿐으로, 상하수도의 사용 증가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0년 당인리 화력발전소 재가동으로 “특정시설분” 세입 증가가 예상되나 세수 규모가 극히 작음에 따라 전체 세수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기존 “특정부동산분”인 “소방분”은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의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 추세에 있어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산출 내역(A+B+C) : 304,768 백만원

① 특정자원분(A) : 1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20년 징수 전망액	X	징수액 신장율 (최근 3년 평균)	=	2021년 추계액
200		95.08%		190

② 특정시설분(B) : 1,164백만원

		(단위 : 백만원)		
'21년 발전 예정량	X	세율	=	2021년 추계액
3,880,746 MW		0.3원 / KW		1,164

③ 소방분(C=㉠+㉡) : 303,414백만원

㉠ 주택: 73,9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년 부과전망액	X	세액신장율	X	징수율	=	2021년 추계액
73,831		102.09%		98.05%		73,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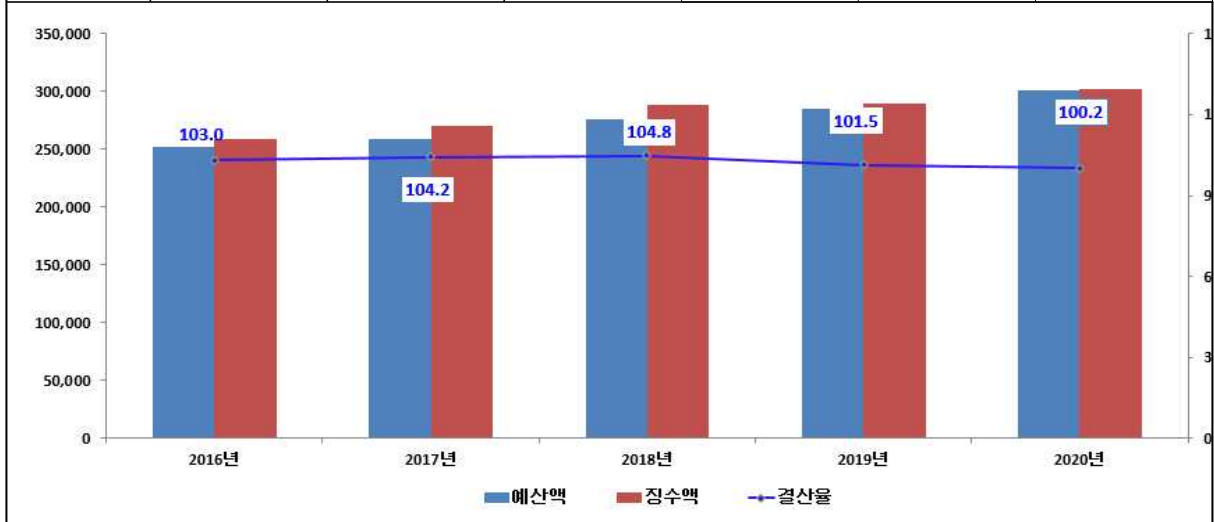
㉡ 건물: 229,5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년 부과전망액	X	세액신장율	X	징수율	=	2021년 추계액
229,327		102.07%		98.05%		229,510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추계
예 산 액	252,023	258,985	275,965	284,868	300,925	304,768
징 수 액	259,467	269,844	289,133	289,260	301,648	
결 산 율	103.0	104.2	104.8	101.5	100.2	



나) 지방교육세

○ 2021년 지방교육세는 전년 예산(1조 5,342억 8천 7백만원) 대비 6.4% (992억 1천 5백만원) 증액한 1조 6,335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세입의 8.1%를 차지하는 세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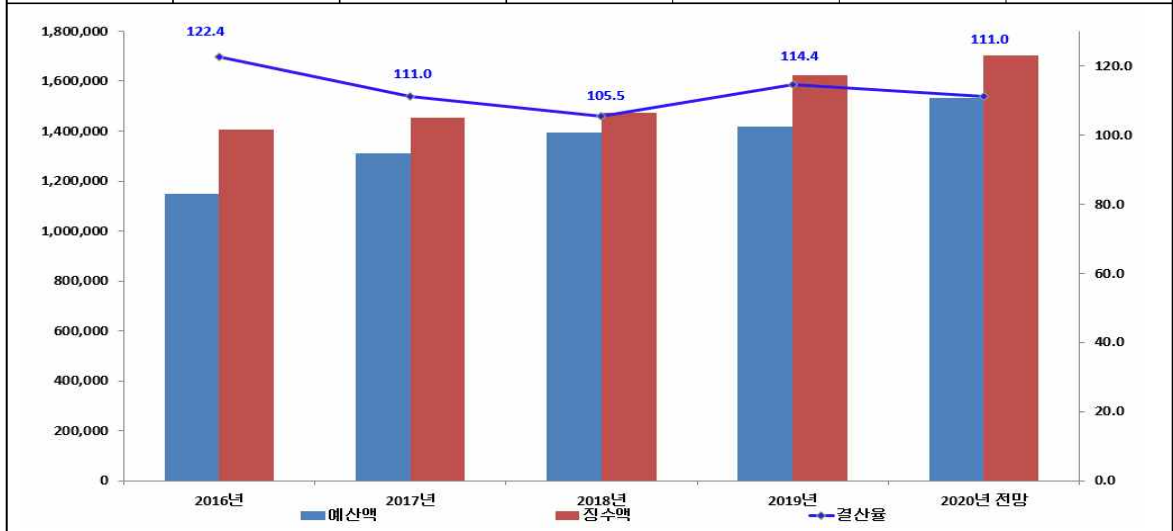
○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취득세(20%), 재산세(20%), 담배소비세(43.99%), 레저세(40%), 균등분주민세(25%), 승용자동차세(30%), 등록분 면허세 (20%) 등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며,

-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목적세로, 교육청의 적정 세출예산 편성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무국의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추계
예 산 액	1,147,581	1,309,577	1,395,553	1,419,493	1,534,287	1,633,502
징 수 액	1,404,846	1,453,765	1,472,237	1,624,330	1,702,785	
결 산 율	122.4	111.0	105.5	114.4	111.0	



3) 지난년도 수입

가) 지난년도 수입(시세)

○ 2021년 지난년도수입 예산은 전년 예산(2,220억 7천 8백만원) 대비 9.4%(210억 7천 3백만원) 감액한 2,010억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세입의 1.0%를 차지하는 세목임.

○ 지난년도 시세는 해당 회계연도 출납정리기간 내에 징수되지 못한 세입을 다음연도 이후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으로,

○ 먼저, 재무국의 지난년도 시세 예산(징수목표)액 대비 결산률을 보면, 2018년의 예산액(징수목표액, 2366억원) 대비 결산률은 85.7%(2,028억원)에서 2019년에는 예산액(2,216억원) 대비 101.9%(2263억원)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총 지난연도 시세(총 체납지방세) 징수율 또한 2018년 지방세체납액(1조 2,560억원) 대비 16.1%(2,028억원)에서 2019년에는 총 지방세체납액(1조 304억원) 대비 22.0%(2,263억원)로 상승하였음.

- 이는 30%를 초과하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에 따라 총 체납액이 감소함으로써 나타나는 상대적 효과로, 징수액(결산액)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결손처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2021년 예산액(징수목표액)은 전년(2,216억원) 대비 9.4%(211억원) 감액 편성하였는바, 재무국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체납징수 활동에 제한이 있고 경기침체로 세입 여건이 악화된 사유로 2021년 예산액(징수목표액)을 감액편성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예산액은 총 체납액의 20% 내외의 수준에서 책정해오고 있는바, 징수 목표(예산액)의 산정은 38세금징수과의 체납 징수 의지를 외부에 표출하는 지표라고 할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예산편성 규모 추세를 볼 때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난년도 시세 징수 추이 분석〉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망)
징수결정액(A)	1,416,742	1,328,201	1,256,009	1,030,407	921,057
예산(징수목표)액(B)	225,248	233,297	236,597	221,567	222,078
예산편성률(B/A)	15.9	17.6	18.8	21.5	24.1
결산(수납)액(C)	237,356	209,405	202,843	226,319	177,294
결산률(C/B)	105.4	89.8	85.7	101.9	79.8
징수율(C/A)	16.8	15.8	16.1	22.0	19.2
결손액(D)	234,810	257,982	383,784	314,213	205,769
결손률(D/A)	16.6	19.4	30.6	30.5	22.3

□ 산출 내역: 201,005 백만원

산 출 식
('20년 세목별 총체납 예상액 × 세목별 징수율) + 특수요인 = '21년 추계액

<세목별 '20년 추계액 산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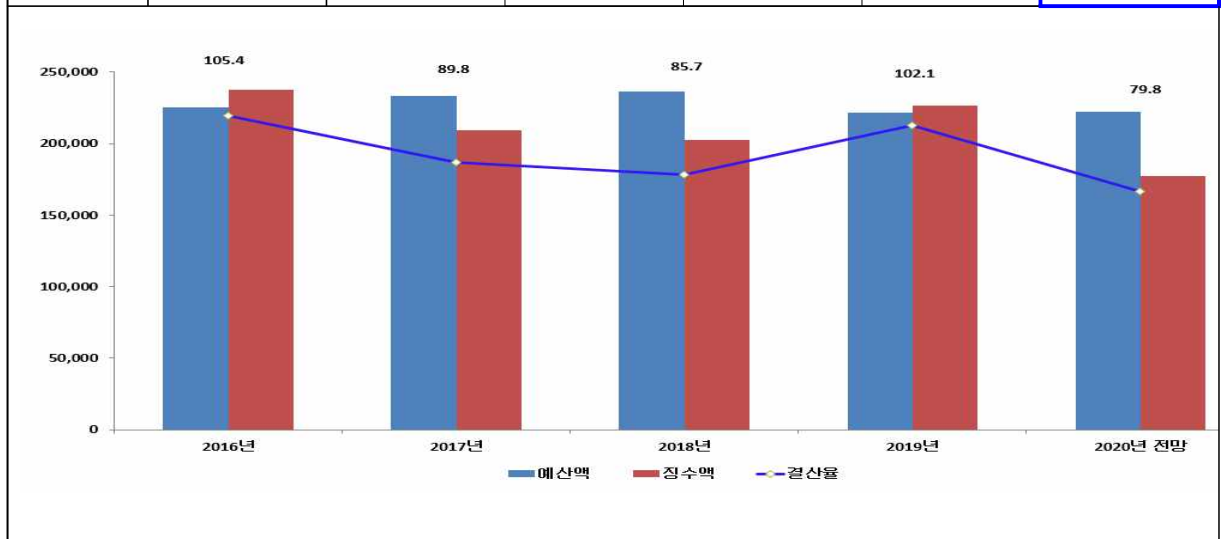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예상 체납현황		'21년 기준체납액 (C=A+B)	'21년 추계현황			추계액 (E+F)
	지난년도 체납(A)	신규발생 체납(B)		징수율 (D)	징수예상액 (E=C×D)	특수요인 (F)	
합 계	416,610	460,651	877,261	-	145,095	55,910	201,005
취 득 세	28,523	15,274	43,797	9.59	4,200	2,098	6,298
주 민 세	7,389	5,959	13,348	29.57	3,947	1,195	5,142
지방소득세	232,264	266,430	498,694	5.64	28,126	1,465	29,591
자 동 차 세	27,778	65,347	93,125	40.45	37,669	32,939	70,608
담배소비세	20,216	0	20,216	0.00	0	0	0
특별시분 재산세	8,388	19,417	27,805	23.49	6,531	4,568	11,099
도시지역분 재산세	69,360	50,701	120,061	35.25	42,322	4,569	46,891
지역자원 시설세	3,440	2,714	6,154	29.87	1,838	680	2,518
지방교육세	19,252	34,809	54,061	37.85	20,462	8,396	28,858

▶ 징수율: 각 세목별 최근 5년 최저 징수율('15년~'19년)

최근 5년 지난년도 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전망	'21년 추계
예 산 액	225,248	233,297	236,597	221,567	222,078	201,005
징 수 액	237,356	209,405	202,843	226,319	177,294	
결 산 율	105.4	89.8	85.7	101.9	79.8	



나. 세외수입 세입예산⁴⁾ 검토

- 2021년 재무국 세외수입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2,286억 5천 6백만원) 대비 9.2%(252억 7천 3백만원) 증액한 2,539억 3천만원으로, 재무국 일반회계 세입(20조 2,793억원)의 1.3%(전년도 1.2%)를 차지하고 있음.

1)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와 일반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로,
 - 최근 3년 평균 징수액(2,554백만원)에 2020년 지가 상승률 (8.25%)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10억 5천 3백만원) 감액한 129억 7천 4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 행정재산 : 공용재산(청사사무실 등), 공공용재산(공원, 도로),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
 -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

4) 이하 2020년 재무국 ‘세외수입 세입’은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이 같음(추가경정예산 등 미편성).

◇ 연도별 공유재산임대료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10,849,298	11,182,769	11,224,899	11,782,706	12,187,236	2,320,536	14,027,853	19,295,740	12,974,134
결산률:103.1%		105.0%		19.0%		137.6%		△7.5%

※ 4개 면허시험장 임대료 '19년 귀속 임대료(73억원)를 '20.1. 징수, '20년도분은 '20.12. 징수 전망.

○ 재무국 공유재산임대료 주요 세입원은 4개 면허시험장에 대한 임대료 ('18년도 기준 89억원, 75.6%)로 2019년 귀속분을 2020년도에 징수하고, 2020년도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연도별 적기 징수를 통한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준수와,

-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시유재산 무단 점유나, 용도 외 사용 등 세원누락 방지를 위한, 자치구 위임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징수에 대한 면밀한 관리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임대수익금의 귀속

- 자치구 위임 : 구 50%, 시 50%,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 서울주택도시공사 15%, 시 85%

2) 기타사용료

○ '기타사용료' 수입은 청사·공원·체육시설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과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시유재산 사용료수입으로, 특수요인*을 제외한 최근 3년 평균 징수액(1,042백만원)에 2020년 지가상승율(8.25%)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 대비 48.4%(11억 1천 5백만원) 감액한 11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임대수익금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2-08 기타 사용료	1.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 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중기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 수입 3.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 연도별 기타사용료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1,056,956	1,809,273	1,102,287	1,961,260	2,091,754	2,153,619	2,301,096	2,069,712	1,185,861
결산률: 171.2%		177.9%		103.0%		89.9%		△48.4%

- 주요 감액 편성 사유는 송파구 풍납동 성벽 복원 및 정비사업으로 ‘삼포 산업’ 사용 부지의 사용계약이 종료(‘20.6.30.)됨에 따른 것으로 이후 점유기간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또는 변상금 처분 예정이며, 송파구에서 토지 인도소송(‘20.8., 2020가합577131,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임.
- 한편 기타사용료 예산대비 결산률을 보면, 2017년 71.2%(7억5천 2백만원) 초과징수, 2018년 77.9%(8억 5천 9백만원) 초과징수, 2019년 10.1%(2억3천1백만원) 부족징수를 전망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는바, 면밀한 세입 분석을 통한 적정 예산 편성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3) 공공예금이자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금고에 공금예금 또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치·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전년 대비 60.7%(214억 8천만원) 감액한 139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장 관 항 목	설 정
200 세외수입			
210 정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 공금예금이자수입
	216-02 용자금회수이자수입		1. 민간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 통화금융기관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3. 공사공단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4. 출자출연기관 용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5. 시·군·구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 COFIX 금리(신규취금액 기준) : 0.88%, '20.11.13.현재) >

구 분	대 상	금 리		이 자 지급시기	비 고
		1금고	2금고		
공금예금	정기예금, 기업MMDA에 예치되지 않은 모든 자금 (별도의 가입해지 없음)	1.52%* (고정금리)	1.71% (고정금리)	1,7월	1월 : 전년도 하반기 이자 7월 : 상반기 이자
정기예금	필요자금 제외한 여유 자금 예치	0.77% (-0.11%)	0.77% (-0.11%)	매월	변동금리, 중도해지 수수료 발생
		0.96% (+0.08%)	0.98% (+0.10%)		
		1.23% (+0.35%)	1.28% (+0.40%)		
		1.43% (+0.55%)	1.44% (+0.56%)		
*기업 MMDA		0.93% (+0.6%)	1.12% (+0.79%)	매월	변동금리, 공문을 통해 수시입출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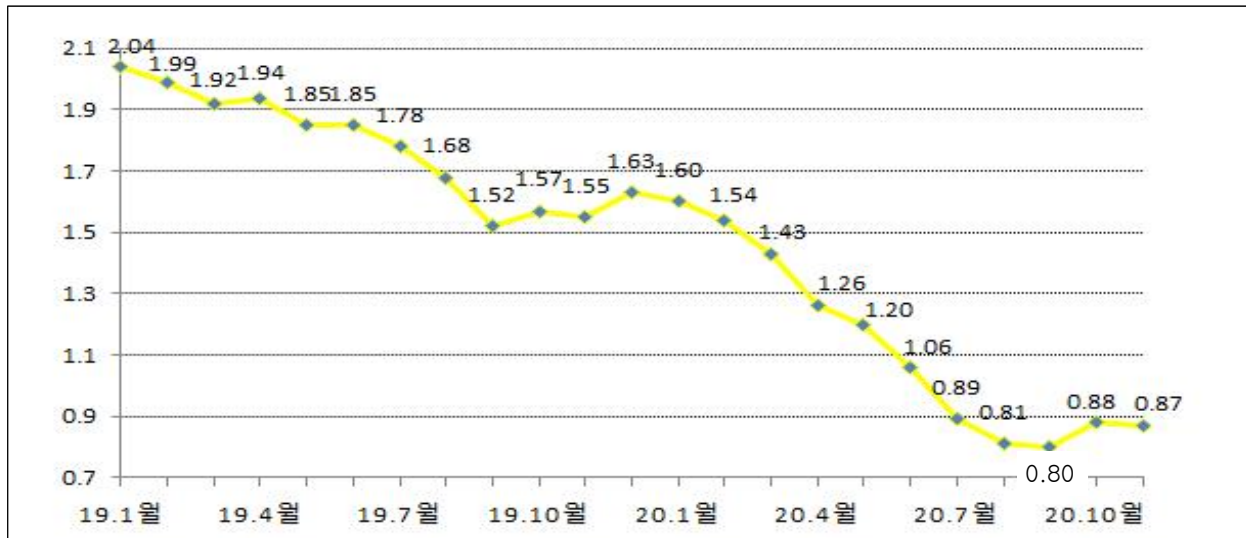
*사금고 예·적금 약정 금리: 정기예금 COFIX금리(기준) +가산금리, 공공예금 1.52%(고정)

◇ 연도별 공공예금이자수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요구액
20,915,836	49,798,492	39,266,904	55,561,525	39,200,441	49,135,587	35,404,000	21,465,164	13,923,152
결산률: 238.1%		141.5%		125.3%		60.6%		△60.7%

○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 편성(139억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020년도 이월액 감소와 예산 신속집행 등에 따른 평균잔액 규모가 축소되고, 정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정기에금 변동금리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금고 약정에 따른 고정금리(1.52%)로 운영되는 공공예금만으로 여유자금을 운영할 계획임.

< 정기에금과 변동되는 코픽스(신규취득액) 기준금리 추이 >



○ 다만, 관련 규정⁵⁾에 따르면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휴자금운영에 재무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0조의4(재정자금의 통합운용) ③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4) 공유재산매각수입금(시유재산 매각 수입금)

○ 재무국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시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전년 대비 83.8%(485억 5천 4백만원) 증액한 1,065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수입금의 귀속

- 자치구 위임 : 구 20~30%, 시 70~80%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 서울주택도시공사 1.85%, 시 98.15%

2021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1년 추계액 : 106,511,747천원
- 산출내역
 - 일반징수 : 41,281,467천원
 - 38,135,304천원('17년도~'19년도 징수평균액)×108.25%('20년도 지가상승률)
 - 특별징수 : 65,230,280천원(송파 위례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56필지, 104,86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 2.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

◇ 연도별 공유재산매각수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511,875,190	49,931,454	514,960,932	109,977,946	472,985,620	29,974,839	57,956,955	43,491,766	106,511,747
결산률: 9.8%		21.4%		2.3%		75.0%		증 83.8%

○ 예산 편성액의 61.2%(652억원)는 송파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변경 승인 고시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일반징수액(413억원)은 2020년도 결산전망액(435억원)에 미달하는 수준임.

※ 위례택지지구개발사업지구 대규모 개발사업 손실보상
(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부 서울위례보상부-3216(2020.6.16.))

보상금액 (감정평가산술평균)	보상금지급		
	소재지	면적(m ²)	보상예정일
감정평가금액			
65,230,280,000원	송파구 장지동 579 외55	56,233	2021년

○ 한편, 2020년 결산전망액은 예산액의 75.0%(434억 9천 2백만원)에 그치고 있는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시유지, 서초구 원지동 60,220m²) 매매계약(773억원, '16.12.8.) 체결 후 사업추진이 중단('19.9.8.)에 의한 매각대금 분납도 중단('20년도분 144억원)으로 세입 결손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추모공원 부지(서초구 원지동)」로 신축·이전 추진

- '14.12.04. 市-복지부간 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업무협약체결(보건의료정책과)
- '16.12.08. 市-복지부간 매매계약 체결(자산관리과)
 - 매각부지 : 서초구 원지동 34-11 외 59필지(60,002m², 733억원)
 - 대금납부 : 5회 분납(20.10월 현재 계약금 및 3차 분납금 납부 완료)
 - ▶ 납부원금 : 44,481,960,640원, 이자 : 2,141,152,450원
 - ※ '20.10월 현재 잔금(2회분) : 288억원
- '19.09.08.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추진 중단' 언론 발표
 - 인근 경부고속도로 소음 등 부적합(복지부와 상의없이 일방 결정)

- 재무국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철회에 따른 기 납입액(445억원, 이자 21억원)의 환급 방법, 위약금 징수의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세입결손은 서울시 전체 재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반하는 재정운영인바 의료원의 서울시(중구 방산동, 구 미공병단 부지) 유치와 함께 또다시 서울시에 불합리한 재정부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그외수입

- 세외수입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계상하는 세입항목으로, 전년 대비 0.1%(1억 1천 5백만원) 증액한 1,061억 4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그외수입 세입내역 : 시금고 출연금 및 법인카드 캐시백, 시유재산 위탁예금 이자수입,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 세입, 주행분 자동차세 관련 이자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6 그외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 연도별 그외수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33,681,640	35,989,026	33,820,969	39,888,116	106,672,580	107,810,892	106,034,875	106,427,116	106,149,979
결산률: 106.9%		117.9%		101.1%		100.4%		증 0.1%

- 주요 세입 내역은 시금고 출연금(1,028억원),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 세입(15억 6천 2백만원), 시세 환급금 소멸시효 완성분 등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난년도 그외수입(기타잡수입, 10억 6천 7백만원), 주행분 자동차세 관련 이자(1억 7천 4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 세입은 시유재산 임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세액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발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아 세입처리하는 것으로,

◇ 연도별 그외수입 중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 세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1,176,112	4,016,338	1,231,947	7,521,111	1,245,649	1,929,229	1,253,221	1,474,678	1,561,621
결산률: 341.5%		610.5%		154.9%		117.7%		증 24.6%

- 예산대비 결산률을 보면, 2017년 341.5%(28억 4천만원 초과), 2018년 610.5%(62억 8천 9백만원 초과), 2019년 154.9%(6억 8천 4백만원 초과)로 예산대비 과도하게 초과징수 하는 등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환급액으로 납부하고 있는 부조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과,
 -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 가산세 처리 등 관련 사무에 관하여 산하기관, 위탁기관 등 관련 기관까지 통합 관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환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통합관리 방안 등 재무국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6) 지난년도 수입 (매각·임대수입 등의 체납금)

- 재무국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은 매각대금,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등이 출납폐쇄로 미수납(체납)되어 당해연도에 징수(수납)되는 세입금으로, 전년 예산대비 4.6%(3억 8천 7백만원) 증액한 73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항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5 지난년도 수입	
	225-01 지난년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 '17년까지 재무국(세무과)에 체납분 세입예산을 통합 편성하였으나, 체납부서의 징수 노력도 제고를 위해 '18년부터 체납발생 부서별 예산편성

◇ 연도별 지난년도수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8,721,866	16,147,961	1,055,525	3,609,020	1,976,322	1,363,122	7,066,455	7,001,775	7,389,224
결산률: 185.1%		341.9%		69.0%		99.1%		증 4.6%

- 주요 증액 사유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3개조합의 시유지 점용에 따른 임대료 누락분 54억원을 세입 편성함에 따른 것임.

2021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1년 추계액 : 7,304,136천원
- 산출내역 : '17~'19년 평균 체납액에 3년간('17~'19년)의 평균 징수율 반영 및 특수요인 반영
= (7,900,980천원 × 24.1%) + (특수요인) 성동구 임대료 체납액 54억원
- ※ 특수요인 :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3개조합 임대료

* '20년 지난년도수입 결산전망액 산출 특수요인

- '20년 지난년도수입은 성동구 재개발구역내 임대료 체납액(41억원)을 반영하여 6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9월 현재 대부분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나 '19년도에 부과된 납기미도래 매각대금 및 임대료의 수납으로 세입목표 달성률은 75%임.
- 매각대금(19억원) : 행당제7구역(15억원), 휘경제3개정비촉진구역(4억원)
- 임대료(31억원) : '20년 면허시험장 임대료

- 한편, 소송 중인 해당 지난연도 임대료 수입을 2021년에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바,
- 무리한 세입 추계는 결국 세수 결손으로 이어져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적극적 응소를 통하여 적기 세입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면밀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1년도 지난년도수입의 세입예산 증액 관련

- '18년도 성동구 재개발사업구역내 6개 조합에 대하여 성동구에서 임대료를 부과
- 이에 4개 조합이 성동구를 상대로 소제기하여 진행중이며, 그 외 2개 조합은 소송 추이를 지켜보며 납부를 보류하고 있음.

조합명	소송 진행사항	체납액 (시세입액 기준)
옥수제13구역	x	40억원
금호제13구역	x	7억원
금호제20구역	3심 진행중 → (1심, 2심 성동구 승)	x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1심 진행중	0.6억원
왕십리뉴타운제2구역	2심 진행중 → (1심 성동구 승)	6억원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3심 진행중 → (1심 성동구 승, 2심 성동구 패)	x

- 성동구에서는 체납중인 4개 조합에 대하여 예금 압류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3개 조합의 소송(각 1심~3심 진행중)에서 성동구의 승소 판결

□ 종합적으로 2021년도 재무국의 세입 추계를 살펴볼 때,

-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와 최근 5년 평균 40%(1조 3,425억원) 수준으로 초과징수 되어온 부동산 취득세 결산 추이로 볼 때, 2020년 부동산 취득세 징수전망액(5조 7,183억원, 예산대비 42.5% 초과징수 전망)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23.2%, △1조 3263억원) 본 예산안 편성(4조 3,919억원)은 지나치게 보수적 관점에서 부동산시장을 분석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지방소득세 결산 추이를 보면 매년 10% 내외의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고, 2021년 예산안은 전년(5조 4,331억 8천만원) 대비 4.3%(2,366억 5천만원) 감액편성 하고 있는바, 국세 추계에 의존하여 국세 대비 지방세 점유비와 서울시 점유비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해온 추계보다는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추계방식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10.6% (2,171억 4천 7백만원) 감액한 1조 8,242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세율 6%가 추가 인상('20년)되기 전인 2019년 결산액(1조 9,283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주된 원인은 세율 인상과 병행하여 국가사업의 지방 이관 소요액을 지방 재원인 지방소비세로 충당시키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뿐 아니라,

- 재산세는 매년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지속되며 가장 안정적인 세입 추세를 보이는 세목이나, 2021년 예산이 편성된 후 정부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정책 등이 발표 (2020.11.3.)되는 등 세입 추계 변수가 확대된 상황으로,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연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면밀한 대응 방안 마련과, 정부의 재산세 인하 발표에 앞서 서초구의 일방적인 탄력세율 적용 발표로 큰 혼란이 야기된 바, 이는 서울특별시세와 자치구세가 혼용 되어 발생한 것으로 제도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산세 세입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 대안 마련을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방세 세입추계를 과다 또는 과소 편성할 경우, 예산을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는 비효율의 발생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재무국의 과학적인 세입 추계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3. 세출예산 검토

○ 재무국 소관 2021년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2조 7,064억 8천 3백만원) 대비 8.3%(2,256억 2백만원) 증액한 2조 9,320억 8천 5백만원 수준임.

※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대비 1.6%(463억 9천 6백만원) 증액한 수준임.

○ 전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액 사업은 “재정보전금”(2,156억 8천 8백만원, 14.8%)이고, 주요 감액 사업은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사업(△262억 1천 8백만원, △78.9%)이며, 신규사업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46억 5,693만천 9백만원)사업,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운영분담금”(1백억원) 사업,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4억 8,377만원) 사업이고, 폐지 사업은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전년 당초 3천 6백만원) 사업,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전년 당초 3천만원) 사업, “체납징수기법 고유 시·구 합동워크샵”(전년 당초 1천 1백만원) 사업임.

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 본 사업은 공통소요 행정물품의 수급관리와 반납물품 처분 및 재활용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자재창고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1,047백만원) 대비 20.7%(2억 1천 6백만원) 감액한 8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도 최종예산(7억 1천 7백만원) 대비 15.8%(1억 1천 3백만원) 증액한 수준임.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자재창고 무인경비 용역 400,000원*12월 = 4,800천원	○ 자재창고 유지관리비 2,500,000원 = 2,500천원
	○ 자재창고 유지관리비 2,500,000원 = 2,500천원	○ 반납물품 매각 및 물품이동 경비 33,000,000원 = 33,000천원
	○ 반납물품 매각 및 물품이동 경비 33,000,000원 = 33,000천원	○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50,000,000원 = 50,000천원
증감사유		
○ 자재창고 무인경비 용역,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는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편성으로 이관		
공공운영비	○ 자재창고 공과금 100,000원*12월 = 1,200천원	○ 자재창고 공과금 140,000원*12월 = 1,680천원
		○ 자재창고 무인경비 용역 400,000원*12월 = 4,800천원
		○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50,000,000원 = 50,000천원
증감사유		
○ 자재창고 공공요금 납부액 증가 ○ 자재창고 무인경비 용역,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는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편성으로 이관		
국외업무여비	○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국외업무여비 50,000,000원 = 50,000천원	○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국외업무여비 35,000,000원 = 35,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로 외국출장 제한에 따라 30%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물품관리 및 지방재정 운용 효율화 추진 20,000,000원 = 20,000천원	○ 물품관리 및 지방재정 운용 효율화 추진 18,000,000원 = 18,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에 따라 10% 삭감	
특정업무경비	○ 특정업무경비 50,000원*115명*12월 = 69,000천원	○ 특정업무경비 50,000원*117명*12월 = 70,200천원
	증감사유	
	특수업무수당 중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재무과, 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현원 기준	
자산및물품취득비	○ 복합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매 436,300,000원 = 436,300천원	○ 복합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매 442,325,000 = 442,325천원
	○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 150,000,000원 = 150,000천원	○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 50,000,000 = 50,000천원
	○ 노후 사무집기 교체 등 230,530,000원 = 230,530천원	○ 노후 사무집기 교체 등 123,205,000 = 123,205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에 따라 18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액편성		

- 동 사업중 ‘국외업무여비’는 전년 당초예산(5천만원) 대비 30.0%(1천 5백만원)를 감액한 3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외업무여비’를 전액(5천만원) 감액하였고,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63개국이고, 2021년에도 상당기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국외출장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0년 11월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63개국이라고 함. 55개 국가·지역은 입국금지 조치, 10개 국가·지역은 격리 조치, 98개 국가·지역은 검역감화 및 권고 사항 등, 24개 유럽 국가·지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하였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s://www.0404.go.kr/dev/main.mofa>), 최종방문 2020년 11월 12일)

< 국외업무여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통계목)	구분	편성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불용 률	출장요약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국외업무여비)	2018년	40,000	13,041	26,959	67.4%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통합관리 선진사례 조사 (호주, 뉴질랜드) ·(세제과) 지방세제 운영모델 기획을 위한 선진연수 (일본, 호주)
	2019년	50,000	42,844	7,156	14.3%	·(세무과) 지방세 차세대정보화 추진 등 연구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재무과) 해외선진 계약제도 연수 등 연구 (영국) ·(자산관리과) 국외 공유재산관리 우수지역 현장방문(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38세금징수과) 캐나다 토론토 거주 체납자 납부독려 및 징수 현장방문 ·(계약심사과) 민간위탁사업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선진연수 (미국)
	2020년	50,000	0	0	0	(제2회 추경 전액감액)

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 본 사업은 재정계획, 예산, 지출, 결산 등 서울시 재정 업무 전 과정을 처리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하 “이호조”) 운영 사업으로, 전년 예산(4천 4백만원) 대비 303.7%(1억 3천 2백만원) 증액한 1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도 예산 증감액 없음.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공기관등에대한경상 적위탁사업비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43,518,000원 = 43,518천원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43,518,000원 = 43,518천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 적위탁사업비	증감사유	
	○ 행정안전부 총괄 구축 예정인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에 대해 서울시 분담금 132,185천원 반영	

- 2021년 예산 증액(1억 3천 2백만원) 사유는,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구축비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분담금 규모는 3억 9천 6백만원으로 3개년에 걸쳐 분할 부담금 중 첫 회분을 분담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총괄개요〉

- 사업금액(3년) : 1,089억원(국비 439억원, 지방비 650억원)
 - 총구축비 : 1,017억원(국비 439억원, 지방비 578억원)

〈 연도별 사업예산(안) 〉

(단위 : 억원)

구 분	세부사업	계	1차('20)	2차('21)	3차('22~'23)
합 계		1,017(100%)	64 (6%)	419 (41%)	534 (53%)
국 비	S/W개발, 연계	439 (43%)	64 (6%)	202 (20%)	174 (17%)
지방비	장비, 자료이관 등	578 (57%)	(0%)	217 (21%)	360 (36%)

- 운 영 비 : 72억원(지방비) * 사업기간 부분개통에 따른 3차('22~'23년) 운영비 반영

- 지난 제296회 임시회(2020년 9월)에서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2020.10.5.)되어, 효율적인 결산검사 수행을 목적으로 결산검사위원에게 필요범위 내의 이호조 열람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한바 있음.
- 그러나 현 이호조는 2008년까지 서울시가 자체 운영하던 ‘서울시 재무회계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하여 구축·운영함으로써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취지를 이호조에 구현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임.
- 재무국은 차세대 이호조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기 위하여 본 예산안을 제출 하였는바, 분담금 지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분담 내역 〉

NO	자치단체	등 급	분담금 (단위:천원)		
			합 계	2021년	2022~2023년
1	서울특별시 본청	1	395,945	132,185	263,760
2	부산광역시 본청	1	395,945	132,185	263,760
3	대구광역시 본청	1	395,945	132,185	263,760
4	인천광역시 본청	1	395,945	132,185	263,760
5	광주광역시 본청	2	362,935	121,185	241,750
6	대전광역시 본청	2	362,935	121,185	241,750
7	울산광역시 본청	2	362,935	121,185	241,750
8	세종특별자치시	3	329,960	110,186	219,774
9	경기도 본청	1	395,945	132,185	263,760
10	강원도 본청	1	395,945	132,185	263,760
11	충청북도 본청	2	362,935	121,185	241,750
12	충청남도 본청	1	395,945	132,185	263,760
13	전라북도 본청	1	395,945	132,185	263,760
14	전라남도 본청	1	395,945	132,185	263,760
15	경상북도 본청	1	395,945	132,185	263,760
16	경상남도 본청	1	395,945	132,185	263,760
17	제주특별자치도	1	395,945	132,185	263,760

※ 구축 후 운영비 별도

다.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 본 사업은 시유재산 매각·교환 추진과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심의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18억 7천 8백만원) 대비 3.3%(6천 2백만원) 감액한 18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도 최종예산(18억 1천 8백만원) 대비 0.1%(1.8백만원) 감액한 수준임.

- 본 사업 예산중 ‘기타부담금(1억 3천만원)’ 신규 편성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해 서울시가 국가와 교환처분(2018.11.)한 시유지에서 매립 폐기물이 발견 (2020.4.)됨에 따라 법률자문, 유사사례 검토 및 국가보훈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 처리비용을 기관 간 분담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7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이전	<p>12. 기타부담금</p> <p>1. 법령에 의거 국가등에 부담해야 할 경비</p> <p>2.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중(40% 해당)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p> <p>3. 지방의회·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등 부담금</p>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100,000,000원 = 100,000천원	○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100,000,000원 = 100,000천원
	○ 감정평가수수료 226,000,000 = 226,000천원	○ 감정평가수수료 50,000,000 = 50,000천원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7,350,000원 = 7,350천원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7,350,000원 = 7,350천원
	○ 재산관리 수수료(측량비 등) 320,000,000 = 320,000천원	○ 재산관리 수수료(측량비 등) 250,000,000 = 250,000천원
	증감사유	
	감정평가 및 재산관리 수수료 등 최근 3개년 집행액 반영	
공공운영비	○ 재산화재 및 가스배상 책임보험료 1,213,981,000 = 1,213,981천원	○ 재산화재 및 가스배상 책임보험료 1,268,643,200 = 1,268,644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공유재산관리 특별업무 추진 등 11,300,000원 = 11,300천원	○ 공유재산관리 특별업무 추진 등 10,170,000 = 10,17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10% 감액	
기타부담금		○ 교환부지 관련 후속조치 비용 130,000,000 = 130,000천원
	증감사유	
	교환 처분 사유지에 대한 후속조치 비용 지급	

- 재무국은 기존 손해배상 소송 사례⁶⁾ 및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보훈처의 교환 부지 내 폐기물 처리비용 분담 제안을 수용하여 국가보훈처 고지서 발급에 따라 2021년 3월 경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기타부담금 발생 개요 및 교환재산 〉

기타부담금 발생 개요

- 사 업 비 : 130백만원(총 처리비용 150백만원(추정)의 80% 수준)
- 지급대상 : 국가보훈처 임정기념관건립추진단
- 지급시기 : '21.2~3월 예상(폐기물 처리비용 확정 및 기관간 정산 이후)

재산 현황

- 소 재 지 : 서대문구 현저동 산5-5
- 교환내역(2018.11.)

구 분	시유재산(서울시→국가)	국유재산(국가→서울시)
소 재 지	서대문구 현저동 산5-5	성동구 송정동 73-309 외 13
면 적	3,656㎡	8,717㎡
공 시 지 가	7,992,016천원	8,002,163천원
이용 현황	서대문구의회 청사 부지	市 사업소 청사 부지
활 용 계 획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市 점유 국유지로 현 용도대로 활용

결과 : 제안수용(서울시 80%, 보훈처 20% 비용 분담)

법률자문 결과·관련판례 등을 고려, 당초 '서울시 전액 부담' 입장을 전환하여 '80:20으로 분담'하자는 국가보훈처 회신의견 수용

-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본 '기타부담금'은 법령에 따라 국가 등에 부담해야 할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호 협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의 지출 과목으로 적정한지, 또는 예비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6) 서울시 매각 시유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17.9) 사례

-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9002 손해배상
- 당 사 자 : 원고-시유지 매수인, 피고-서울특별시
- 소송결과 : 市 일부패소(폐기물 처리비용의 80% 및 지연이자 市 부담)

라.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 법정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46억 5,693만 1백만원(순증)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도 예산 미편성.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4,656,931	(x-) 4,656,931	(x-) 100
출연금	(x-) 0	(x-) 0	(x-) 4,656,931	(x-) 4,656,931	(x-) 100

- 본 예산은 출연동의안 심사가 보류(제289회 임시회, 2019.9.)되어 당시 편성하지 못한 2020년 귀속분과, 2021년 귀속분에 대한 2개년도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출연금	○ 2018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16,128,993,106,000원*0.015% = 2,419,349천원	○ 2018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16,128,993,106,000원*0.015% = 2,419,349천원 ○ 20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 17,212,165,492,000원*0.013% = 2,237,582천원
	증감사유	
	2020년 미교부 출연금 반영 및 20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증가	

- 다만, 2021년도 귀속분 또한 출연동의안이 심사 보류(제296회 임시회, 2020.9.)되어 있는바, 본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바 재무국에서 편성한 본 사업 예산 전액의 삭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출연동의안 심사 보류 주요 사유는, 일반적인 출연기관과는 다르게 시행령으로 출연규모를 강제하여 재정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 출연금 과다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연구원의 고유목적과는 별개의 청사를 매입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 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서울시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 국	80,148	3,940	4,597	6,587	7,712	7,137	8,267	7,570	12,102	10,844	11,392
서울시	19,631	969	1,134	1,281	2,303	1,758	1,950	362	4,410	2,631	2,833
시본청	16,470	795	953	955	1,975	1,446	1,636	-	4,044	2,247	(2,419)
자치구	3,161	174	181	326	328	312	314	362	366	384	414
시본청 점유율	20.4	20.2	20.7	14.5	25.6	20.3	19.8		33.4	20.7	21.2
시 전체 점유율	24.8	24.6	24.7	19.4	29.9	24.6	23.6	4.8	36.4	24.3	24.9

※ 2020년도분 출연동의안 심사 보류로 현재까지 미출연 중임(표 통계자료에는 포함하여 산출).

- 다만 2021년도 서울시 출연금은 22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 산출액 대비 1억 8천 2백만원 감소(△7.5%)하였는바,

※ 산출내역 : 전전년도('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입결산액(17,212,165,492원)×0.013%

※ 산출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금 감소 사유는 지방세수의 지속적인 신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연구원 출연 등을 위해 적립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하향 조정하

고자 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개정(예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사실상 출연금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연구원 청사 매입(2017년 7월, 총 176억원) 대금을 4년('17~'20년)의 기간 동안 완납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연률을 인하한 것임.

- 따라서 앞서본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서울시 세입 사무의 자치구 위임징수에 따라,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50억원)과 동일하게 예산(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자치구기타재원 조정비	○ 시 세입증대 자치구 지원비 5,000,000,000원 = 5,000,000천원	○ 시 세입증대 자치구 지원비 5,000,000,000원 = 5,000,000천원

※ 포상금 1억원 별도 교부

- 재무국은 본 사업에 대하여 시세종합징수분야, 세원발굴 실적, 체납징수의 3가지 분야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동기유발을 통한 세입증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최근 3년간의 사업 결과를 보면, 25개 모든 구청에 재원조정비의 명목으로 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바, 사실상 고르게 나누어 차등 분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최근3년간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종합 〉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19년	2018년	2017년
합계	15,300,000	5,100,000	5,100,000	5,100,000
총 로	666,260	233,700	198,860	233,700
총 구	480,540	160,970	158,600	160,970
용 산	623,770	170,930	281,910	170,930
성 동	423,180	160,240	102,700	160,240
광 진	894,270	326,980	240,310	326,980
동대문	604,730	189,210	226,310	189,210
중 랑	742,870	241,730	259,410	241,730
성 북	850,020	311,830	226,360	311,830
강 북	288,800	39,370	210,060	39,370
도 봉	525,250	122,870	279,510	122,870
노 원	329,720	163,860	2,000	163,860
은 평	641,010	213,500	214,010	213,500
서대문	663,230	217,060	229,110	217,060
마 포	848,820	311,830	225,160	311,830
양 천	491,420	140,680	210,060	140,680
강 서	608,870	191,280	226,310	191,280
구 로	551,110	224,180	102,750	224,180
금 천	318,710	140,680	37,350	140,680
영등포	521,340	132,390	256,560	132,390
동 작	951,120	311,930	327,260	311,930
관 약	769,120	246,230	276,660	246,230
서 초	513,180	193,810	125,560	193,810
강 남	479,080	166,610	145,860	166,610
송 파	745,220	226,580	292,060	226,580
강 동	768,360	261,550	245,260	261,550

- 한편, 행정국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의안번호 1939, 2020.10.16.)되어 있고, 전국공무원노조에서도 자치구 경쟁 유발로 직원들이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등의 사유로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 예산 50억원의 재정지원비가 모든 구에 나눠주기식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고,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경쟁을 유인할 수 있는 동기부여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재무국의 인센티브 방식의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음.

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운영분담금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을 부담하려는 것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시 세입증대 자치구 지원비 5,000,000,000원 = 5,000,000천원	○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담금 10,000,000,000 = 10,000,000천원

- 본 사업 추진 경위를 보면 당초 자체 ‘세입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것으로 추진해 오다가,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바 있음.

①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 관련 그간 추진 경과

- 서울시 지방세입시스템을 배제하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개정(19.2.13.) : 2022년 2월까지만 인정

○ 시장 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스템 통합 반대의견 표명(19.6.13.)

- 지방세입시스템 행안부 장관만 구축·운영하는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19.8.14.)
- 시스템 통합에 대한 장단점 분석 등 종합적 재검토 요청(행정1부시장, '19.9.17.)
- 2019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스템 관련 적극 대응 요구('19.11.5.)
- 통합 전제조건으로서 4대 요구사항(서비스, 시스템, 예산, 운영 등) 전달 ('19.12.18.) ⇨ 행안부 답변('20.1.8.) ⇨ 市 내부 검토회의 개최(3회)
- 양 기관 실무 협의('20.2.10.) 및 행안부 추진단 내방 설명회('20.3.10.)
- 선택 대안별 검토결과 조건부 통합으로 시장단간담회 보고('20.3.17.)
- 시스템 통합관련 서울시 요청사항 ⇨ 행안부 긍정 회신('20.4.9.)

○ 행안부 차세대 시스템 통합사업 참여로 시장방침 결정('20.4.25.)

- 행자위원 방문 시스템 통합 결정(요구자료) 설명('20.4.27. ~ 29.)
 - 정책 변경사유 등 입장설명
- 임기제 직원 고용 안정관련 면담 실시('20.5.8. ~ 6.8.)
 - 재무국장, 행안부 차세대 추진단장 등과 임기제 직원의 고용 안정대책 면담
- 「지방세입정보통신망 개발·운영 위원회」 개최('20.5.15.)
 - (안건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의결 등 ※ 강원도 위원장 선출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분과별 통합작업 협업추진('20.5.19.~ 계속)
 - 1단계 구축 완료보고회 개최 ※ 영상회의: 세외수입(5.29), 세무행정(6.26.)
 - 차세대 시스템 소개 및 서울시 시스템 파악(분석) 실시

- 재무국은 2019년 상반기까지 자체 '세입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세입시스템 통합 시도는 서울시의 기투자비용의 매몰비용 발생, 과세자주권 훼손,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주장 하면서 항의방문과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 2019년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이전과는 반대로 통합에 동조하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음.

구분	2019년 상반기 까지(보고서)	2019년 하반기부터 (2019 행감자료 1269쪽)
비용 (예산) 측면	○ 254억원의 추가 재정부담과 562억원의 매몰비용 발생	○ 시스템 통합이 215억원 유리 - 구축비(추정): 통합시 분담금 242억원, 市 시스템 고도화시 457억원
과세 자주권	○ 중앙정부에 지방세 과세권 종속 및 자치분권에 역행 - 지방세 과세권과 징수권은 분리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안부가 인정해오던 서울시 시스템을 다시 폐지하려는 것은 과세 자주권 침해 - 과세자료의 보관, 관리 및 활용은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데이터 관리 주체를 행안부로의 변경은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려는 지방분권에 역행	○ 지자체 중심의 통합시스템 운영 확보 ○ “지방세입정보통신망 개발·운영 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자체 중심의 통합시스템 관리·운영 방안 마련 - 위원회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 추천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 지자체 중심의 위원회를 통해 차세대 시스템 개발·운영 중요사항 의결 - 자율적 정책수행을 위한 시스템 및 DB의 접근 가능성 보장 가능
법(제도) 측면	○ 중앙정부에 지방세 과세권 종속 및 자치분권에 역행 ○ 행안부 훈령개정에 대한 반대입장 제출 : 개별 수납시스템 운영중인 인천·부산시와 공동대응 및 지방세 기본법 개정 건의	○ 관련 규정 개정 없이 우리 시스템 유지 불가 ○ 훈령 개정으로 서울시 시스템 '22. 2. 3. 이후 독자 유지 불가 ○ 우리 시스템 고도화 사전 절차로 행안부 중복성 심사 승인 필요 - 행안부 차세대 구축 시스템과의 중복을 이유로 우리 시스템 승인 불허
시스템(기술) 측면	○ 행안부의 운영시스템 독점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납세편의 시책의 도입 등 세입정보시스템 발전에 장애	○ 효율성 확보 및 재정시스템과 연계 확대 추진 ○ 시스템 통합 운영이 자원할당 및 전국 공통 서비스 제공에 효율적 ○ 정부는 '23년부터 차세대 지방세입과 지방재정 시스템 연계 추진
대응방안	○ 자치분권 보장과 과세자주권 보호를 위해 독자적 세입시스템 지속 운영 ○ 현 시스템 유지에 따른 시·구의 구	○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사업 참여 계획

구분	2019년 상반기 까지(보고서)	2019년 하반기부터 (2019 행감자료 1269쪽)
	축비용 및 운영비용 최소화 ○ 내·외 고객 지원 및 신속한 납부편의시책 제공을 위해 독자운영 필요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비는 2,208억원 규모로 국비 564원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비 1,644억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구분	사업계획							
사업기간	○2019 ~ 2022년(4개년) ※'22년 개통 ○대상 :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							
사업특징	① 국민 납세편의 강화 ② 자치단체 세무행정 효율 증가 ③ 데이터 기반 첨단 세정 구현 ④ 예산절감 및 시스템관리 체계화 ※ 유사 시스템 중복 구축에 따른 납세자 혼란, 예산낭비 방지							
사업규모	구축비(SW 개발비, HW·상용SW 구입비, 감리비, 예비비) : 2,208억원 (단위: 억원)							
		계	국비	지방비	서울시	계	'21	'22
	계	2,208	564	1,644		227	152	75
	지방세	1,804	534	1,270		181	106	75
세외수입	404	30	374	46		46		
※2021년 서울시 분담금 152억원 중 세출예산(안) 100억원 반영								

- 이 중 서울시 부담액은 227억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2021년 분담 요구액 152억원 중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임.

※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비는 2,208억원 규모로 국비 564원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비 1,644억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예산편성 요구 기간 경과 후 분담금이 확정되어 100억원만 우선 편성

- 다만, 서울시 자체 세입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오다가 갑작스럽게 행정안전부 통합시스템으로 참여 하는 것으로 결정("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사업 참여 계획, 세무과-9757, 2020.4.25.,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87호)한 것은,

- 행정안전부 통합 시스템 구축비(2,208억원)의 산정이 적정한 규모인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과 함께 분담 적정성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없는 재무국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분담금 부담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 한 것이라 하겠음.
- 또한,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사업으로 설계가 완료 된 상황이며, 서울시가 동 사업에 포함되게 될 경우 설계 부터 다시 추진해야하는 것으로 보여짐.
- 한편, 현재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체 선정 중에 있으나 2회에 걸쳐 유찰되었고, 3차 공고 중에 있으며, 유찰되는 사유가, 개발에 참여할 업체입장에서 (1)기존 지방재정관리(이호조)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는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3년의 기간을 부여한 데 반해, 금번 세입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는 개발기간을 25개월만 부여함에 따른 부담과 (2)사업비 규모에 비해 이택스, 위택스와 세외수입시스템까지 통합해야하는 사업범위가 과도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짐.
- 만약 서울시 계획대로 서울시가 동 계획에 포함되어 시스템을 개발 하게 될 경우는 사업 기간도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투자예산의 규모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동 사업에 포함될 경우 다양한 세입처리 사항 등에 따라 사업추진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현재 25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가 개발한 시스템을 별도의 분담비용 없이 시스템을 사용해 왔으며 금번 차세대 세무시스템의 개발에 따라 분담금을 분담하여야 하나,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분담해야할 분담금을 서울시에서 납부하기 위해 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재무국은 서울시 세입시스템 고도화 비용과 행안부 통합시스템 참여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면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자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안전부 통합시스템 가입에 따른 분담금 규모에 비하여 약 23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시스템 재개발(고도화) 및 운영 비용 비교 〉

구분	현 시스템	독자 재개발비	차세대 통합 분담금(가내시)	차액
구축비	· 세무 종합 · 101.4억원 ※ 대우정보통신 -개발비 47.2억, HW비 54.2억	· 320억원*	· 181억원 (wetax 포함)	· 139억원
	· 세외 수입 · 28.5억원 ※ 에스큐테크놀로지 -개발비 15.8억, HW비 12.7억	· 137억원**	· 46억원	· 91억원
	· 수납 시스템 · 298억원 (금고변경) · 32억원 (기투입 고도화비)	· 232억원 (시금고예산)		
운영비	· <합 계> 22.4억원 · (세무종합) 14.4억원(개선비 포함) · (세외수입) 8억원(개선비 포함)	※ (추정) 개발비의 13~14% ⇨ 차세대 통합에 따른 서울시 운영비 분담금 추정치 : 매년 30~35억 원		

* 세무종합 고도화 비용은 'CYD정보기술'에 의뢰 기능점수7)(Function Point) 추계

** 세외수입 '18년 실시한 BPR/ISP 자료로 산정

※ 하드웨어와 오라클 구입비 등은 'VTW' 업체에 의뢰하여 추계

- 다만, 이는 시금고에서 부담하여 구축한 ETAX 시스템 고도화 비용 298억원과 현 세무종합시스템 등에 기 투입된 고도화 비용 8억원 (합계 306억원) 중 상당부분은 매몰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구축비 면에서 행정안전부 통합시스템 참여가 유리하다는 주장은 시스템 변경에 따른 기 투자된 매몰비용과 우월한 기존시스템의 사장, 신규시스템 사용에 따른 불안정성 및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서울시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논리적 설계를 기초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량화하고, 계수적 측정을 통한 실험적 관계를 통해 개발 규모(비용)를 산정하는 방법

- 또한, 부담하게 될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 규모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재정적 측면에서 정확한 비교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판단을 통한 재무국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재무국은 행정안전부 통합 시스템에 참여하고자 본 예산안을 제출하였는바, 분담금 지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변화에 따른 수시로 발생하는 세무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 차세대세입시스템 통합 관련 자치구 의견 수렴 결과(2019.2.) 〉

1. 〈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개정에 대한 자치구 의견 제출 결과 〉

○ 의견수렴 : 2019. 1. 30. ~ 2. 8.

구청명	의견	구체적 의견
25개 區 중 20개 區 제출 (용산, 성북, 마포, 동작, 송파 미제출)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령 개정안이 2022. 2. 3. 시행될 경우 우리시 시스템 시영 불가 • 자치분권 침해이며 지방자치의 역행임 • 지자체에 통합 시스템 개발 구축·운영비용 전가

※ 영등포구는 최초 전국적 지방세입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찬성의견이었으나 반대로 의견 변경 제출

2. ‘서울시 지방세정부시스템 유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2019.1.31.)

사.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및 운영 전환에 따른 세입시스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4억 3천 4백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연구용역비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방안 컨설팅 483,770,000 = 483,770천원

- 본 사업비 또한 앞에서 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운영분담금’ 신규 편성과 같은 사유로 편성된 예산인바,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

[참고 자료] 재무국 보고자료(2020.11.)

전국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참여경과 보고

□ 추진경과

- 전국 지방세입시스템 별도 운영 중 : 서울시('99.~) / 16개 시·도('06.~)
- 노후화된 세입정보시스템의 행안부 주관 통합개발 추진, 서울은 독자 운영 방침에서 최근 세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통합 참여로 정책변경('20.4월)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개요

구 분	사 업 계 획																																
사업기간	○ 2019 ~ 2022년(4개년) ※'22년 개통 ○ 대상 :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																																
사업특징	① 국민 납세편의 강화 ② 자치단체 세무행정 효율 증가 ③ 데이터 기반 첨단 세정 구현 ④ 예산절감 및 시스템관리 체계화 ※ 유사 시스템 중복 구축에 따른 납세자 혼란, 예산낭비 방지																																
사업규모	구축비(SW 개발비, HW·상용SW 구입비, 감리비, 예비비) : 2,208억원 (단위: 억원) <table border="1"><thead><tr><th></th><th>계</th><th>국 비</th><th>지 방 비</th><th>서울시</th><th>계</th><th>'21</th><th>'22</th></tr></thead><tbody><tr><td>계</td><td>2,208</td><td>564</td><td>1,644</td><td></td><td>227</td><td>152</td><td>75</td></tr><tr><td>지방세</td><td>1,804</td><td>534</td><td>1,270</td><td></td><td>181</td><td>106</td><td>75</td></tr><tr><td>세외수입</td><td>404</td><td>30</td><td>374</td><td></td><td>46</td><td>46</td><td></td></tr></tbody></table> ※ 2021년 서울시 분담금 152억원 중 세출예산(안) 100억원 반영		계	국 비	지 방 비	서울시	계	'21	'22	계	2,208	564	1,644		227	152	75	지방세	1,804	534	1,270		181	106	75	세외수입	404	30	374		46	46	
	계	국 비	지 방 비	서울시	계	'21	'22																										
계	2,208	564	1,644		227	152	75																										
지방세	1,804	534	1,270		181	106	75																										
세외수입	404	30	374		46	46																											

□ 시스템 구축사업 진행상황

- 市 요구사항(서비스, 시스템, 예산, 운영 등) 전달('19.12.18.) ⇨ 행안부 답변('20.1.8.)
⇨ 양 기관 실무 협의('20.2.10.) ⇨ 통합구축 참여로 시장방침('20.4.25.)
- 행안부 1단계 사업(분석·설계) 완료, 2단계 구축사업 추진('20.10.~'20.2.)
- 행안부·서울시 차세대 시스템 통합추진 실무 협업 중('20.6.18.~)

참고 전국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참여관련 검토결과

□ 시스템 운영별 장·단점 비교

구분	우리시 독자 시스템 유지	전국 시스템 통합 참여
납세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일리지 등 서울시 특화서비스 제공 유리. 단, 서울·지방 2곳 이상 납세자는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시스템 이원화로 인한 불편 방지 및 납세자가 전국 과세물건 조회·납부 가능
행정효율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의 세무·전산 전문조직을 활용하여 우리시 추진사업의 자율적·적시적 반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지자체 과세정보 공유 및 활용 • 국가관리자료 과세활용 가능(부동산 등기부, 자동차등록망, 국세청자료 등) ※ 대외자료 연계기관(22): 행안부, 관세청, 국세청, 국토부, 대법원, 복지부 등
비용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시스템 이용시 대략 23억원으로 운영 가능하였으나, • 우리시 시스템 또한 재개발 시기가 도래되어 독자 구축시 457억원 소요 추정(etax 포함시 68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서비스 제공, 별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 •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 및 국비지원(총 564억) 혜택 향유 • 市 분담금 227억원(가내시) 수준
법(제도)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훈령 개정으로 '22. 2월 이후 우리시 시스템 사용불가 • 행안부 중복성 심사 통과 불가 	

□ 종합검토 결과 ➡ 우리시 통합 참여 유리 및 불가피

- 납세자 및 행정효율·비용적 측면에서 우리시의 통합 참여가 유리
 - 구축비 절감(약 230~462억) 및 향후 시스템 운영비 등도 절감 가능
- 차세대 시스템에 향후 서울시가 참여할 경우에는 기존 분담금에 서울시 부분 시스템 추가 개발비 등 더 많은 비용부담 불가피
- 범국가적 시스템 구축사업에 우리시 우수정책 등 기여 및 역할 제고 필요